



로앤비 e-핸드북: ESG 주요 내용 및 관련 법률이슈와 국내외 동향

토스너로이터 로앤비

본 로앤비 e-핸드북 [로앤비 e-핸드북: ESG 주요 내용 및 관련 법률이슈와 국내외 동향]은 로앤비의 [로펌 리포트] 및 [논문평석] 엮어 발행하였습니다. 로앤비 e-핸드북은 각 로펌의 동의 하에 본문을 게재하였으며, 논문평석 자료 및 콘텐츠는 추천리스트와 초록을 게재하였습니다. 본 자료의 무단전제 및 상업적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LAWnB e-Handbook: ESG Highlights, Related Legal Issues, and Trends in domestic and overseas

Thomson Reuters, LAWnB

www.lawnb.com



THOMSON REUTERS®

Table of Contents

로앤비 e-핸드북: ESG 주요 내용 및 관련 법률이슈와 국내외 동향	3
I. ESG	4
[ESG]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드선 제정	5
ESG 정보공개 가이드선 및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10
ESG 모범규준 개정 - 국내외 Best Practice/동향 반영, 기업 대응 요망 -	15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모범규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7
ESG 정보 공시 확대- 금융위원회의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추진 발표 및 한국거래소의 「ESG 정보공개 가이드선」 제정 등	19
기업공시제도 개선 방안 1 - ESG 정보 공개 관련	22
ESG 관련 거시 규제 및 기관투자자 동향	24
기업 비재무정보(ESG) 공시가 재무성과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28
<ESG - 환경 (Environment)>	29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 - ESG 경영 촉진을 위한 환경정보 공개제도 대상 확대 -	30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환경 모범규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32
ESG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의 안전확보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34
수소경제 가속화 -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 시행 -	38
ESG 정보 공시 확대- 금융위원회의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추진 발표 및 한국거래소의 「ESG 정보공개 가이드선」 제정 등	40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 마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 발의	44
II. 해외	47
ESG 브리핑(2021 년 5 월 1~2 주 및 4 월 1-4 주)	48



로앤비 e-핸드북:

ESG 주요 내용 및 관련 법률이슈와 국내외 동향

안녕하세요. 톰슨로이터 로앤비입니다.

최근 기업의 비재무적 지표인 **ESG**(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이는 국내외 큰 이슈이자 기업이 추구해야할 필수적인 경영방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기존의 수익과 성과만을 중시하던 기업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는 친환경, 사회적 책임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로앤비 e-핸드북 "ESG 주요 내용 및 관련 법률이슈와 국내외 동향"은 ESG의 가이드선스 등과 함께 ESG 중 많은 사람들이 관심갖고 있는 환경(Environment) 관련 콘텐츠로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ESG 관련 쟁점 혹은 동향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파악해 적절한 시기에 ESG에 대한 추가적인 e-핸드북과 더불어 각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에 대해서도 더 심도있게 다룬 개별 리포트를 순차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본 리포트는 ESG 관련 로펌리포트 및 학회논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콘텐츠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 혹은 국회 입법동향 등의 다양한 자료들을 로앤비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법률 리포트 및 기고문 등을 법조계 및 금융업계 종사자 분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각 로펌과 변호사 및 담당자 분들께 다시 한번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톰슨로이터 로앤비

정보제공 동의 로펌 (가나다순)

법무법인(유) 광장	법무법인(유) 로고스	법무법인(유) 바른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울촌	법무법인(유) 지평	법무법인(유) 태평양	법무법인(유) 화우



I . ESG



로펌리포트 (LAWNB LAW FIRM REPORTS)

[ESG]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드نس 제정	지평	임성택, 이준희, 장영은, 김원순	2021.01.20
ESG 정보공개 가이드نس 및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태평양	안영수, 배용만, 김경수, 김은미	2021.02.04
ESG 모범기준 개정 - 국내외 Best Practice/동향 반영, 기업 대응 요망 -	화우	박상훈, 한상구, 신승국, 이광욱, 이근우, 조준오	2021.03.18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모범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세종	이용국, 김병태, 문경화, 송수영	2021.03.10
-ESG 정보 공시 확대- 금융위원회의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추진 발표 및 한국거래소의 「ESG 정보공개 가이드نس」 제정 등	화우	박상훈, 한상구, 신승국, 이광욱, 이근우, 조준오	2021.01.27
기업공시제도 개선 방안 1 - ESG 정보 공개 관련	세종	이용국, 문경화, 송수영	2021.01.14
ESG 관련 거시 규제 및 기관투자자 동향	태평양	박준기, 강동욱, 유종권, 최철웅	2020.12.21



학회논문 (LAWNB ACADEMIC JOURNALS & ARTICLES)

기업 비재무정보(ESG) 공시가 재무성과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한국규제학회	김윤경	2020년 06월
--------------------------------------	--------	-----	-----------



[ESG]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드스 제정

법무법인(유) 지평

임성택, 이준희, 장영은, 김원순

2021. 1. 20

JIPYONG 법무법인 지평

[ESG] 한국거래소, ESG 정보공개 가이드스 제정

“앞으로 기업의 ESG 정보는 IPO 절차를 준비하는 기업에게는 IPO의 향방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하고 상장기업에게는 투자자의 투자판단과 기업 가치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정보로 기능할 것이 명확히 예견됩니다. IPO 준비 기업이나 상장기업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ESG 보고 체계를 구축하여 ESG 정보공개 관련 대책을 완비하고 ESG 가이드에서 권고하는 정보공개원칙을 준수하여 권고지표를 중심으로 기업의 ESG 정보를 적절히 준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계획(2021. 1. 14. 발표)의 후속절차로서, 한국거래소는 2021. 1. 18. 자 보도자료(이하 '보도자료')를 통해 「ESG 정보공개 가이드스」(이하 'ESG 정보공개 가이드스')를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SG 정보공개 가이드스는 상장기업이 ESG 관련 중요 정보를 추출하고 대외 공개하는 체계를 마련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지침으로써 ESG의 개념,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 정보공개원칙, 중요성 평가,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절차, 권고공개지표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SG 정보공개 가이드스의 주요 구성

1. 목적	가이드스 제정의 목적
2. ESG의 개념	ESG의 개념, 정보공개의 필요성
3.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ESG 이슈 관리를 위한 이사회·경영진의 역할
4. 정보공개원칙	ESG 정보공개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
5. 중요성	중요성의 개념 및 중요성 평가 절차
6.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절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보고서 작성 절차
7. 공개지표	주요 정보공개 표준 및 권장 공개지표

이하에서는 ① 정보공개원칙, ② 권고공개지표, ③ 중요성 평가 절차, ④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절차 등 ESG 정보공개 가이드스의 핵심적인 내용을 소개해 드리오니 기업의 ESG 정보공개 대책을 마련하시는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ESG 정보공개원칙

한국거래소는 ESG 정보공개 가이드스에서 상장기업이 ESG 정보공개 시 지켜야 할 정보공개원칙으로 ① 정확성(Accuracy), ② 명확성(Clarity), ③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④ 균형(Balance), ⑤ 검증가능성(Verifiability),

⑥ 적시성(Timeliness)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SG 정보공개원칙

정확성(Accuracy)	명확성(Clarity)	비교가능(Comparability)
균형(Balance)	검증가능성(Verifiability)	적시성(Timeliness)

상장기업은 ESG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정보의 오류나 누락을 방지하여야 하며(정확성), 정보공개는 이해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되어야 하고 정성적 정보와 정량적 정보가 적절히 사용되어야 합니다(명확성). 또한, 당해 기업의 성과 및 다른 기업의 성과와도 비교할 수 있도록 글로벌 표준에 따른 일관된 방법을 적용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비교가능성). 정보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업에 유리한 정보뿐 아니라 불리한 정보도 공개하여야 하며 불리한 정보에 관해서는 기업의 대응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균형). 정보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정의, 수집 및 기록되어야 하며, 정보의 공개는 재무보고서와 유사한 내부통제절차를 따라야 하고, 독립적인 제 3 자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검증가능성). 정보공개는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적시성을 위해서 재무보고서와 ESG 정보의 공개기간을 동일하게 하여 재무보고서 발간 이후 최대한 빠른 시기에 ESG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재무적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ESG 이슈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적시에 공개하여야 합니다(적시성).

2. 권고 ESG 공개지표

한국거래소는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ESG 관련 정보공개 표준과 이니셔티브 지표 중 핵심적이고 공통적인 지표들을 선정하여 ESG 권고공개지표(12 개 항목 21 개 지표)를 마련하였고 기업이 ESG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이러한 지표를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은 '공개 또는 설명(Respond or Explain)' 원칙에 따라 각 지표를 공개하여야 하고, 만약 특정 지표가 생략되는 경우에는 주석 등을 이용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구분	항목	지표	비고
조직	ESG 대응	경영진의 역할	ESG 이슈의 파악/관리와 관련한 경영진의 역할
	ESG 평가	ESG 위험 및 기회	ESG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평가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의 ESG 프로세스 참여 방식
환경	온실가스 배출	직접 배출량(Scope 1)	회사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물리적 장치나 공장에서 대기중으로 방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간접 배출량(Scope 2)	회사 소비용으로 매입 또는 획득한 전기, 냉난방 및 증기배출에 기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 집약도	활동, 생산 기타 조직별 미터법의 단위당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

구분	항목	지표	비고
환경	에너지 사용	직접 에너지 사용량	조직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체의 에너지 소비량
		간접 에너지 사용량	판매제품의 사용 및 폐기처리 등 조직 밖에서 소비된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 사용 집약도	활동, 생산 기타 조직별 폐기처리 등 조직 밖에서 소비된 에너지 소비량
	물사용	물 사용 총량	조직의 물 사용 총량
	폐기물 배출	폐기물 배출 총량	매립, 재활용 등 처리 방법별로 폐기물의 총 중량
	법규 위반·사고	환경 법규 위반·사고	환경 법규 위반·환경 관련 사고 건수 및 조치 내용
사회	임직원 현황	평등 및 다양성	성별·고용형태별 임직원 현황, 차별 관련 제재 건수 및 조치내용
		신규 고용 및 이직	신규 고용 근로자 및 이직 근로자 현황
		청년인턴 채용	청년인턴 채용 현황 및 정규직 전환 비율
		육아휴직	육아휴직 사용 임직원 현황
	안전·보건	산업재해	업무상 사망, 부상 및 질병 건수 및 조치 내용
		제품안전	제품 리콜(수거, 파기, 회수, 시정조치 등) 건수 및 조치 내용
		표시·광고	표시·광고 규제 위반 건수 및 조치 내용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 위반 건수 및 조치 내용
	공정경쟁	공정경쟁·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내부거래·하도급거래·가맹사업·대리점거래 관련 법규 위반 건수 및 조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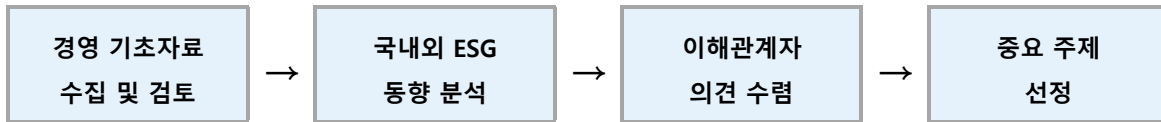
또한 기업은 지표의 연도별 증감 현황 및 그 이유, 기업의 대응 전략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지표는 연간 기준으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와 다른 경우에는 대상기간을 따로 밝혀야 합니다.

3. 중요성 평가,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절차

한국거래소는 ESG 정보공개 가이드선에서 기업이 ESG 관련 보고서 작성을 준비할 때 우선적으로 거쳐야 되는 중요성 평가 절차에 대해 소개하고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절차 전반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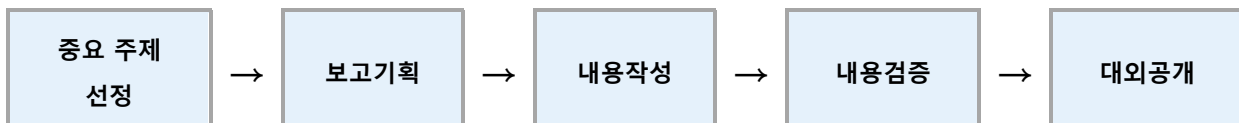
기업은 모든 ESG 이슈를 보고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중요성 평가를 통해 잠재적인 ESG 이슈 중에서 중요성(Materiality)를 고려하여 공개할 정보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보고서에 포함될 주제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의 발생 가능성과 그 강도, 해당 주제에 의한 위험과 기회의 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중요성 평가 절차



중요성 평가 절차 1 단계에서 기업은 기초자료(경영전략, 이사회 회의록, 부서별 KPI, 내부감사보고서 등)를 수집 및 검토하여 ESG 관련 이슈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ESG 요소가 경영 전략 및 의사 결정에 어떻게 연계되어 관리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2 단계에서는 언론보도 및 동종산업 벤치마킹 조사를 통해 ESG 관련 외부 환경을 분석하고, 3 단계에서는 이해관계자의 관심 사항을 파악한 후 마지막으로 중요성을 평가하여 중요 주제와 우선 순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고서 작성 절차



중요 주제가 선정되고 나면, 보고서 작성에 앞서 전체적인 보고 방향을 기획하여 이해관계자의 관심사항, 기업 전략, 기업의 사업모델, 중요 주제 등을 고려한 보고서 프레임을 먼저 정하게 됩니다. 보고서 내용 작성 시에는 ESG 활동에 대한 단순한 나열을 피하고 ESG 요소를 기업의 전략, 조직 구조, 운영체계, 활동 및 성과목표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공개원칙에서 제시된 요건을 고려하면서 권고지표 관련 내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내용 작성 후에는 보고 담당자, 자료 수집 담당자 등이 함께 검토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보고서 작성 내부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제 3 자를 통해 독립적인 검증을 진행하고, 공인된 검증표준을 준용하여 객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접근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업의 홈페이지 및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KIND) 등 적절한 공개 채널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정보는 연 1 회 이상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매년 일정한 시기에 공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4. 시사점

한국거래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앞으로도 ESG 정보공개 및 책임투자 확대가 기업과 자본시장의 지속가능 성장으로 이어지는 ESG Value-Chain 구축을 위하여 관련 정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1 월 14 일에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하였는데, 2025 년까지 ESG 관련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 공시를 활성화하고, 2030 년까지 단계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코스피 상장사에 한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 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에 대하여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기업의 ESG 정보는 IPO 절차를 준비하는 기업에게는 IPO의 향방을 결정짓는 요소로 작용하고 상장기업에게는 투자자의 투자판단과 기업 가치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정보로 기능할 것이 명확히 예견됩니다. IPO 준비 기업이나 상장기업은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ESG 보고 체계를 구축하여 ESG 정보공개 관련 대책을 완비하고 ESG 가이드에서 권고하는 정보공개원칙을 준수하여 권고지표를 중심으로 기업의 ESG 정보를 적절히 준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ESG 정보공개 가이드선스 및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안영수, 배용만, 김경수, 김은미

2021. 2. 4

bkl 법무법인(유한)태평양

ESG 정보공개 가이드선스 및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금융위원회는 2021. 1. 14. 기업의 공시 부담 감소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활성화” 방안으로 ‘ESG 정보공개 가이드선스’ 제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2021. 1. 18. ‘ESG 정보공개 가이드선스’(이하 “ESG 가이드선스”)를 제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ESG 가이드선스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지속가능성보고서, 통합보고서 등의 이름으로 ESG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이를 위한 기본원칙 등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ESG 가이드선스는 향후 기업의 ESG 정보공시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자산총액 2 조원 이상인 기업은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한 준수 현황과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기재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 1. 14. 기업의 공시 부담 감소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활성화” 방안으로 ‘ESG 정보공개 가이드선스’ 제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2021. 1. 18. ‘ESG 정보공개 가이드선스’(이하 “ESG 가이드선스”)를 제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ESG 가이드선스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지속가능성보고서, 통합보고서 등의 이름으로 ESG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이를 위한 기본원칙 등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ESG 가이드선스는 향후 기업의 ESG 정보공시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자산총액 2 조원 이상인 기업은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에 대한 준수 현황과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기재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하 ESG 가이드선스 및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ESG 가이드선스의 주요내용

ESG 가이드선스는 ESG 정보공개원칙으로 6 가지 원칙, 즉 ① 이해관계자가 기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그 정보가 정확할 것(정확성 Accuracy), ② 이해관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보가 제공될 것(명확성 Clarity), ③ 기업의 목표와 성과를 비교할 수 있고, 이를 다른 기업의 성과와도 비교할 수 있을 것(비교가능성 Comparability), ④ 기업의 유리한 정보뿐만 아니라 불리한 정보도 보고서에 포함하여 정보의 완전성을 보장할 것(균형 Balance), ⑤ 정보는 검증이 가능하도록 정의, 수집 및 기록될 것(검증가능성 Verifiability), ⑥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것(적시성 Timeliness)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각 기업은 잠재적인 ESG 이슈 중에서 그 정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할 정보의 범위와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데, 중요성 평가를 위해 글로벌 공개 표준을 활용할 수 있으며, 주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조직의 중요 이슈를

파악하게 됩니다.

ESG 정보공개 이니셔티브는 조직이 효율적으로 ESG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자율적 준수가 가능한 기준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요 기관 및 이니셔티브는 다음과 같습니다.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	모든 조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보공개 기준을 제시하고, 경제, 환경, 사회 분야의 지표를 구체화하였습니다.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Framework)	조직의 ESG 요소와 관련된 시장 전망과 함께 조직의 ESG 전략, 체계, 운영, 가치 창출 활동 공개를 요구합니다.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TCFD)	금융기관이 거래 대상의 기후변화 관련 위험·기회를 파악하기 위해 조직이 공개해야 하는 사항을 제시합니다.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SASB)	산업별 재무적으로 중요한 ESG 정보공개 지표를 제시하며, 미국 SEC 10-K, 20-F 적용을 권고합니다.

기업이 ESG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그 성과를 공개하기 위해 다양한 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표준/이니셔티브가 제시하는 지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각각의 정보 공개표준/이니셔티브가 제시하는 지표들은 매우 다양하며, 다양한 정보 공개 표준/이니셔티브들이 제시하는 지표 중 핵심적이고 공통적인 지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항목	지표	비고
조직	ESG 대응(1)	경영진의 역할	ESG 이슈의 파악/관리와 관련한 경영진의 역할
	ESG 평가(1)	ESG 위험 및 기회	ESG 위험 및 기회에 대한 평가
	이해관계자(1)	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의 ESG 프로세스 참여 방식
환경	온실가스배출(3)	직접 배출량(Scope 1)	회사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물리적 장치나 공장에서 대기중으로 방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간접 배출량(Scope 2)	회사 소비용으로 매입 또는 획득한 전기, 냉난방 및 증기배출에 기인한 온실가스 배출량
		배출 집약도	활동, 생산 기타 조직별 미터법의 단위당 배출된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사용(3)	직접 에너지 사용량	조직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주체의 에너지 소비량
		간접 에너지 사용량	판매제품의 사용 및 폐기처리 등 조직 밖에서 소비된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 사용 집약도	활동, 생산 기타 조직별 미터법의 단위당 필요한 에너지 소비량
	물사용(1)	물 사용 총량	조직의 물 사용 총량
	폐기물배출(1)	폐기물 배출 총량	매립, 재활용 등 처리 방법별로 폐기물의 총 중량
	법규위반·사고(1)	환경 법규 위반·사고	환경 법규 위반·환경 관련 사고 건수 및 조치 내용

구분	항목	지표	비고
사회	임직원현황 (4)	평등 및 다양성	성별·고용형태별 임직원 현황, 차별 관련 제재 건수 및 조치 내용
		신규고용 및 이직	신규 고용 근로자 및 이직 근로자 현황
		청년인턴 채용	청년인턴 채용 현황 및 정규직 전환 비율
		육아휴직	육아휴직 사용 임직원 현황
	안전·보건(3)	산업재해	업무상 사망, 부상 및 질병 건수 및 조치 내용
		제품안전	제품 리콜(수거, 파기, 회수, 시정조치 등) 건수 및 조치 내용
		표시·광고	표시·광고 규제 위반 건수 및 조치 내용
	정보보안(1)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 위반 건수 및 조치 내용
	공정경쟁(1)	공정경쟁·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내부거래·하도급거래·가맹사업·대리점거래 관련 법규 위반 건수 및 조치 내용

2.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 연혁 및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는 2017. 3.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자율공시 형태로 도입되었습니다. 기업이 공시하는 지배구조 보고서는 거래소가 선정한 10 가지 핵심원칙에 대해 기업이 준수 여부 및 미준수 사항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는 CoE(Comply or Explain)방식으로 작성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율공시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지배구조 정보의 유용성을 높이고자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을 개정하여(2018. 12. 19. 금융위원회 의결) 2019 년부터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 조원 이상의 유가증권시장 주권상장법인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공시를 의무화¹하였고(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 24 조의 2 제 1 항 및 제 2 항), 이와 관련 기업간 비교 가능하고 충실한 정보의 공시를 위해 필수 공시사항 등을 정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시행세칙 제 7 조의 2 제 2 항). 한편, 금융위원회는 2021. 1. 14.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여,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대상이 2022 년에는 자산 규모 1 조 원 이상, 2024 년에는 5,000 억 원 이상, 2026 년에는 전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가 잘못 기재되거나 중요사항이 미기재된 경우 거래소는 정정신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 24 조의 2 제 2 항), 기업지배구조 보고서가 기한 내 신고되지 않은 경우, 거래소가 정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정정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공시불이행으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됩니다(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 29 조 제 1 호 및 제 29 조 제 2 호의 2).

가이드라인 주요내용을 보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제시된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10 개)에 대해 세부원칙을 설정하고 세부원칙별로 구체적인 공시사항을 제시했습니다.

¹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으로부터 2 개월 이내(12 월 말 결산 시 5 월 말까지)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 따라 공시하는 지배구조연차보고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 24 조의 2 제 1 항 [별표]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구분		핵심원칙
주주	주주의 권리	① 주주는 권리행사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고, 적절한 절차에 의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주주의 공평한 대우	② 주주는 보유주식의 종류 및 수에 따라 공평한 의결권을 부여받아야 하고,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공정하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사회	이사회 기능	③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이익을 위하여 기업의 경영목표와 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이사회 구성	④ 이사회는 효율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경영진을 감독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이사는 다양한 주주의견을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선임되어야 한다.
	사외이사의 책임	⑤ 사외이사는 독립적으로 중요한 기업경영정책의 결정에 참여하고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을 감독,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사외이사 활동의 평가	⑥ 사외이사의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들의 활동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지급 및 재선임 여부가 결정되어야 한다.
	이사회 운영	⑦ 이사회는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위한 최선의 경영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사회 내 위원회	⑧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감사기구	내부감사기구	⑨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 및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성실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내부감사기구의 주요 활동내역은 공시되어야 한다.
	외부감사인	⑩ 기업의 회계정보가 주주 등 그 이용자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투명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준수를 장려할 필요가 있는 핵심 지표 15 개(필수지재 사항)를 선정해 '○X' 표기로 준수 여부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²

구분	핵심지표
주주	① 주주총회 4 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② 전자투표 실시*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 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이사회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² 작성 기준시점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단, * 항목은 보고서 제출일 직전 정기 주주총회 기준 ** 항목은 공시대상 기간 내에 해당내용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구분	핵심지표
주주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⑧ 집중투표제 채택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이사회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⑫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⑬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⑭ 집중투표제 채택
	⑮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한편, 한국거래소는 2020. 3. 31.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기존의 공시 세부원칙 23개 및 필수기재사항 30개를 세부원칙 27개 및 필수기재사항 60개로 확대하였습니다.

3. 향후 전망

최근 전세계적으로 주주행동주의가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2016년 12월 한국 스토크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제정된 이래 이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파악한 집계에 따르면, 2020. 2. 1. 기준 총 146개³의 기관투자자가 스토크어드십 코드에 참여하고 있으며, 총 44개⁴의 기관투자자가 스토크어드십 코드 참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스토크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이 투자이사 결정 및 자산운용 과정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하는데, 리스크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장기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투자 결정에 ESG 요소를 포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책임투자의 인식 확산에 따라 기업에 대한 투자판단 시 고려해야 하는 비재무적 요소의 하나로 ESG[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중요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내 시장은 기업 경영과 관련하여 행동주의 펀드의 활동 증가,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 관련 자본시장 법령의 정비 등으로 기업의 지배구조 관련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업은 지배구조를 포함한 ESG 투자 등 기업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고 이에 대한 주주들의 선호를 이해하여야 하며, 잠재적 우려 요소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더욱 커졌습니다.

³ 연기금 3, 보험사 5, 자산운용사 49, PEF 운용사 47, 증권사 4, 투자자문사 2, 서비스기관 4, 은행 2, 기타 30, 총 146개의 기관투자자

⁴ 자산운용사 1, PEF 운용사 15, 투자자문사 1, 기타 27, 총 44개의 기관투자자

ESG 모범규준 개정 - 국내외 BEST PRACTICE/동향 반영, 기업 대응 요망 -

법무법인(유) 화우

박상훈, 한상구, 신승국, 이광욱, 이근우, 조준오

2021. 3. 18



법무법인(유) 화우
YOON & YANG

ESG 모범규준 개정 - 국내외 BEST PRACTICE/동향 반영, 기업 대응 요망 -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최근 ESG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경영환경과 국제 추세 미반영 등으로 인한 평가와의 괴리 등 기존 모범규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외 Best Practice-동향을 반영하고, 원칙 및 공시 중심 규범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개정안의 내용을 숙지하여 향후 ESG 관련 업무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최근 ESG 모범규준 개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경영환경과 국제 추세 미반영 등으로 인한 평가와의 괴리 등 기존 모범규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외 Best Practice-동향을 반영하고, 원칙 및 공시 중심 규범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기업은 개정안의 내용을 숙지하여 향후 ESG 관련 업무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주요 개정 사항

ESG 모범규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각 분야별로 소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가. 환경 모범규준 주요 개정 사항

- I. 리더십과 거버넌스, 위험관리, 운영 및 성과, 이해관계자 소통 등 4개 대분류 신설을 통해 전사적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환경경영 관리 프로세스의 통합 관리를 유도
- II. 전 세계적인 환경 정보공개 요구 급증에 따라 기후 관련 재무보고 공시를 권고하는 글로벌 가이드라인 (TCFD* 가이드)을 준용하는 등 자율 공시체계 관련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대폭 반영
- III. 기후변화 이슈 및 환경경영과 관련된 국내외 가이드라인, 법/규제 동향 등을 수록, 모범규준 활용도 제고

* TCFD: 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나. 사회 모범규준 주요 개정 사항

- I. 환경 모범규준에서와 마찬가지로 리더십과 거버넌스, 위험관리, 이해관계자 소통 대분류 신설을 통해 사회책임경영과 기존 경영전략의 통합을 유도
- II. 이해관계자 분류 중심의 기존 대분류를 ‘운영 및 성과’로 통합하고 중분류를 인권, 노동관행, 공정운영관행, 지속가능한 소비, 정보보호,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 등 6개 항목의 사회책임경영 주요 이슈 중심으로 재편
- III. 사회책임경영 이슈와 관련된 국내외 가이드라인, 법/규제 동향, 우수 사례



등을 수록하여 모범규준 활용도 제고

다. 지배구조 모범규준 주요 개정사항

- I.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이해관계자, 시장에 의한 경영감시로 구성되었던 기존 5개 대분류를 이사회 리더십, 주주권 보호, 감사,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의 주요 4개 대분류로 재편하여 해외 모범규준 및 가이드라인과의 적합성을 제고
- II. '이사회 리더십' 대분류 아래는 '이사회 역할과 책임' 중분류,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대분류 아래는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직접소통' 중분류를 신설하여 관련 세부내용 추가
- III. 경영전략·위험관리·보상체계 등에서 지속가능성 검토를 추가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적극적인 ESG 경영유도

2. 향후 일정 및 기업의 대비

모범규준 개정 추진 방향으로 보아, 녹색채권 등 친환경 자금 조달을 통한 환경경영 활동을 이행하고 있는지, 비재무 위험 관리 효과성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는지 등 기존 지속가능보고서 수준의 ESG에서는 제대로 다루지지 않았던 TCFD 나 Taxonomy(녹색분류체계), 사후보고 등을 포함한 기업의 ESG 경영 전반에 대해 더욱 세밀하고 강화된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기업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기공시 외에도 주요사항 결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는지, 지배구조와 관련된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정보공개에 관한 규준이 추가됨에 따라 정보공개에도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모범규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법무법인(유) 세종

이용국, 김병태, 문경화, 송수영

2021. 3. 10

SHIN & KIM
법무법인(유)세종

한국기업지배구조원 ESG 모범규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모범규준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모델에 활용되는 것은 물론 많은 국내 상장기업들의 ESG 경영의 기준으로 작용하였고, 정부의 각종 정책 관련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ESG 모범규준(안)을 검토하여 경영 현실과 괴리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영향에 대비하는 한편, ESG 모범규준(안)을 적극적으로 회사 경영에 반영하여 각종 내부 규정 및 사업의 전 과정에 반영이 가능한 부분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ESG 경영에 내실을 기하는 동시에 ESG 평가등급 개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지배구조 및 사회책임경영의 방향을 제시하는 환경 모범규준, 사회 모범규준 및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이하 총칭하여 “ESG 모범규준”이라 합니다)을 제정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환경모범규준과 사회모범규준은 2010년 12월에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된 적이 없었으며,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1999년 9월에 제정된 이후 2003년 2월 1차 개정, 2015년 8월에 2차 개정이 되었습니다. ESG 모범규준(특히 환경 모범규준, 사회 모범규준)이 제정 또는 개정된 지 오래되어 국·내외 동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ESG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하였고, 2021년 3월 10일 ESG 모범규준(안)을 공개하였습니다.

1. 환경 모범규준(안)의 주요 개정 내용

■ 체계 변경

① 리더십과 거버넌스, ② 위험관리, ③ 운영 및 성과, ④ 이해관계자 소통의 4개 대분류로 재편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전체적인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환경경영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환경 모범규준 개정안은 환경경영에서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환경 및 기후변화에 있어서 기업에 위험이 되는 요소뿐만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환경정보 공개를 신설하여 글로벌 동향을 반영하였습니다.

■ 국·내외 환경 자율 공시체계 반영

탄소가격제, 온실가스 감축 등 CDP(Carbon Disclosure Project),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등의 자율 공시체계 관련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환경 모범규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 모범규준에 반영한 국·내외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또는 예시 등을 부록에 수록하여 기업이 환경 모범규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사회 모범규준(안)의 주요 개정 내용

■ 체계 변경

사회책임경영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① 리더십과 거버넌스, ② 비재무 위험관리, ③ 운영 및 성과, ④ 이해관계자 소통의 4개 대분류로 재편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업의 전체적인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사회책임경영을 통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사회 모범규준 개정안은 사회책임경영에서의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으며, 인권, 공정운영, 지속가능한 소비, 정보보호, 지역사회 참여 및 개발 등의 중분류를 신설하여 소비자 및 지역사회를 넘어서 인권 및 노동 등 다양한 사회적 책임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보 공개 또한 신설되어 기업의 사회책임경영 관련 정보의 접근성 및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의 주요 개정 내용

■ 체계 변경

① 이사회 리더십, ② 주주권 보호, ③ 감사, ④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의 4 개 대분류로 재편하였으며, 해외 모범규준 및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직접 소통'의 중분류를 신설하여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주주의 이익을 더욱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보 공개를 신설하여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정보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ESG 경영 관점 도입

경영전략 · 위험 관리 · 보상체계 등에서 지속가능성 검토를 추가하고 주주 및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적극적인 ESG 경영을 유도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4. 향후 일정

① 공개 의견수렴(3 월 예정)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ESG 모범규준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였으며, 이후 3 주간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② 공청회 개최(4 월 예정)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4 월 중으로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최종 개정안으로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③ 개정 ESG 모범규준 발표(4 월 예정)

4 월 중으로 ESG 평가위원회에서 ESG 모범규준 개정안을 확정된 이후, 보도자료 등을 통해 개정 ESG 모범규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5. ESG 모범규준(안) 개정의 시사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모범규준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평가모델에 활용되는 것은 물론 많은 국내 상장기업들의 ESG 경영의 기준으로 작용하였고, 정부의 각종 정책 관련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국내 기업들은 ESG 모범규준(안)을 검토하여 경영 현실과 괴리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영향에 대비하는 한편, ESG 모범규준(안)을 적극적으로 회사 경영에 반영하여 각종 내부 규정 및 사업의 전 과정에 반영이 가능한 부분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ESG 경영에 내실을 기하는 동시에 ESG 평가등급 개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SG 정보 공시 확대- 금융위원회의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추진 발표 및 한국거래소의 「ESG 정보공개 가이드스」 제정 등

법무법인(유) 화우

박상훈, 한상구, 신승국, 이광욱, 이근우, 조준오

2021. 1. 27



법무법인(유) 화우
YOON & YANG

ESG 정보 공시 확대- 금융위원회의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추진 발표 및 한국거래소의 「ESG 정보공개 가이드스」 제정 등

“ESG 로 대변되는 비재무적 요인을 강조하는 기업문화 및 투자문화의 확산으로 기업의 공개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이번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의 발표도 그런 추세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기업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ESG 트렌드에 발맞춰 ESG 정보 공시를 확대함과 동시에 주주와의 소통, IR, 재무/사업 등 정책 수립에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1.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2021. 1. 14. 기업 공시부담 경감, 투자자 보호 강화, ESG 책임투자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 추진을 발표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주요 내용
투자자의 공시정보 이용 편의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보고서 체계와 공시항목을 일반투자자가 알기 쉽게 개편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체계 정비
기업의 공시부담 경감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보고서 서식을 핵심정보 중심으로 개편(공시항목 40% 감소) • 소규모기업 공시부담 경감을 위해 대상기업 및 생략 항목 확대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G 정보의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 의무화 추진 •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 평가 평가 후 개정 검토 • 의결권자문사 정보 공개 추진

각 시기별 단계에 따른 조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시기)	조치
1 단계(~2025 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공시 활성화(연 20% 증가 목표)
2 단계(2025 년~2030 년)	일정규모 이상(예: 자산 2 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대하여 공시 의무화(약 211 개 회사 이상 의무화+자율공시 정착·확산)
3 단계(2030 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에 대하여 공시 의무화



2. 1 단계 조치의 일환으로, 한국거래소(KRX)는 2021. 1. 18. 상장법인의 ESG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하여 「ESG 정보공개 가이드선」을 제정·발표하였고, 같은 달 25. 금융위원회와 환경부가 발표한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에도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 배경

최근 글로벌 자본시장은 기업의 비재무적 요인을 투자이사 결정에 반영하는 ESG 투자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여전히 기업의 비재무정보의 공개수준은 제한적인 실정인바, 「ESG 정보공개 가이드선」을 통해 정보공개를 위한 실질적 방법 등을 안내함으로써 ESG 정보공개에 익숙하지 않은 상장법인들에게 그 방향을 제시함

나. 목적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지속가능성보고서 등 기업의 자율적 ESG 정보공개에 대한 기본 원칙 등에 관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다. 주요 내용

- 목차「ESG 정보공개 가이드선」는 다음과 같은 목차로 내용 구성

<「ESG 정보공개 가이드선」 목차>

구분	주요 내용
1. 목적	가이드선 제정의 목적
2. ESG의 개념	ESG의 개념, 정보 공개의 필요성
3. 이사회 및 경영진의 역할	ESG 이슈 관리를 위한 이사회·경영진의 역할
4. 정보공개원칙	ESG 정보 공개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
5. 중요성	중요성의 개념 및 중요성 평가 절차
6.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절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보고서 작성 절차
7. 공개지표	주요 정보공개 표준 및 권장 공개지표

- 권고공개지표

주요 항목에 대한 Best Practice 및 공개 대상 정보 선택에 참고 가능한 권고공개지표(12개 항목 21개 지표) 제시

<권고 공개지표>

구분	조직	환경	사회
항목	ESG 대응(1) ESG 평가(1) 이해관계자(1)	온실가스배출(3) 에너지사용(3) 물사용(1) 폐기물배출(1) 법규위반·사고(1)	임직원현황(4) 안전·보건(3) 정보보안(1) 공정경쟁(1)

※ 괄호안의 숫자는 해당 항목 세부 지표의 수를 나타냄



ESG 로 대변되는 비재무적 요인을 강조하는 기업문화 및 투자문화의 확산으로 기업의 공개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며, 이번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의 발표도 그런 추세에 따라 이루어졌으므로, 기업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ESG 트렌드에 발맞춰 ESG 정보 공시를 확대함과 동시에 주주와의 소통, IR, 재무/사업 등 정책 수립에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기업공시제도 개선 방안 1 - ESG 정보 공개 관련

법무법인(유) 세종

이용국, 문경화, 송수영

2021. 1. 14

SHIN & KIM
법무법인(유)세종

기업공시제도 개선 방안 1 - ESG 정보 공개 관련

“2019년부터 한국거래소에서는 자산 2 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거래소에서는 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하여 의무 공시 대상 법인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2021. 1. 14. 기업공시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통하여 ESG 책임투자 확대 추세를 반영한 다음과 같은 기업들의 ESG 정보공개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 공시 대상 법인 확대

2019년부터 한국거래소에서는 자산 2 조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에 대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한국거래소에서는 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하여 의무 공시 대상 법인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아래와 같이 확대할 예정입니다.

적용시기	2019년(시행중)	2022년	2024년	2026년
자산총액	2 조원 이상	1 조원 이상	5 천억원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전체

2. ESG 정보 공개 가이드를 통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활성화

매년 100 여개 회사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자율공시의 형태로 거래소에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공시하는 회사는 2019년 기준으로 20 개사에 불과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ESG 관련 투자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관련 정보 공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그 작성기준도 불명확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1 단계(~2025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자율공시를 활성화

2 단계(2025년~2030년): 일정규모 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에 대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를 의무화

3 단계(2030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전체에 대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화

또한 한국거래소는 2021년 1월 중 (i) 정확성, 명확성, 비교가능성, 적시성 등 ESG 정보 공개 일반 원칙, (ii) 공시 표준화를 위해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Best Practice, (iii) 중요성 평가 절차, 이해관계자 소통채널 등에 대한 우수사례 소개, (iv) 공시지표 국제표준(GRI, WFE 등), 공시 절차 및 방법 안내 등을 담은 ESG

정보 공개 가이드스를 발표할 예정인바 현재 상장기업들이 명확한 기준이 없이 작성하여 공시하고 있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작성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활성화 정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 의결권 자문사 관련 제도 정비

의결권 자문사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주주총회 안건 분석, 의결권 행사방향을 권고하는 등 투자대상기업의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의존도는 해마다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결권 자문사의 경우 관련 법령상 제한이 없어 기관투자자와 기업을 동시에 고객으로 할 수 있고(이해상충 이슈), 의결권 자문사가 주총 안건 분석, 의결권 행사방향 자문에 필요한 충분한 분석능력과 전문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의결권 자문사가 제공한 서비스에 사용된 자료의 출처, 작성 방법 및 과정에 대한 공시가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2021년 중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의결권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의결권 자문사에 대하여 행동강령(code of conduct), 이해상충 방지·통제방안, 분석능력 및 전문성 등에 대한 정보를 고객인 금융투자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위 정보를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결권 자문사 이용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에서는 향후 의결권 자문사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제를 도입하고 관리·감독 관련 근거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마련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4.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검토

2016년 12월 스튜어드십 코드 제정 이후 2020년 11월 기준으로 133개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는 그간의 시행성과를 평가하여 2021년 4분기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SG 관련 거시 규제 및 기관투자자 동향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박준기, 강동욱, 유종권, 최철웅

2020. 12. 21

bkl 법무법인(유한)태평양

ESG 관련 거시 규제 및 기관투자자 동향

“각국 정부는 기후위기 관련 입법, 의무공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제도 도입을 통하여 ESG에 부합하는 경영·투자 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유럽·미국 및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에 무게를 두는 투자를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는바, 최근 주요 입법 내용 및 기관투자자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국 정부는 기후위기 관련 입법, 의무공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제도 도입을 통하여 ESG에 부합하는 경영·투자 환경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유럽·미국 및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들은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한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 창출을 목표로 하는 투자에 무게를 두는 투자를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는바, 최근 주요 입법 내용 및 기관투자자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 및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마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발의

국회는 지난 2020. 11. 11. 이른바 “그린뉴딜 기본법”이라고 불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는 상기 법안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섭씨 1.5도 이내로 제한하는데 필요한 사회·경제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탈탄소사회를 구현하여 기후위기에 따른 지구적 위험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상기 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의 주요 골자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목표 법제화 및 이행계획의 수립

-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국가전략의 수립 및 국가기후위기위원회 설치 등
- 국가기후위기대응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 탈탄소사회 이행을 위한 추진제도
- 탈탄소경제의 구현
- 기후위기 적응과 정의로운 전환 대책 및 기후위기대응기금의 설치·운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 발의

국회에서는 또한 지난 2020. 11. 13.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통해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인 발전과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을 촉진하고, 녹색금융공사를 설립하여 그린뉴딜의 초기 리스크를 국가 주도로 감내하면서

녹색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발전, 성장시키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상기 법안은 2020. 11. 11. 발의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제 52 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ESG 이슈와 관련하여서도 “책임투자”를 명확히 정의하고, “녹색분류체계”를 수립하며, 녹색금융 촉진의 기본원칙 및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국제적인 ESG 기준에 따라 환경사회영향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공개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고 있는바, 상기 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의 주요 골자

-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 수립 및 녹색분류체계 마련
- 녹색금융 촉진을 위한 공공금융지원
- 금융기관의 책무 및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제한
- 녹색채권 등 채권 발행의 특례
- 녹색금융공사의 설립 및 그 업무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제도적 변화

-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지난 2020. 12. 9. 다중대표소송제도 및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도의 도입, 소수주주의 권리 강화 등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골자로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2106223)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상기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으며, 개정안과 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에 관한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골자

- 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 감사위원회위원 분리선출제도 도입 및 선임·해임 규정 개선
- 전자투표로써 감사위원회위원 또는 감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총회 결의요건 완화
-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정비

- 대규모 상장법인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한국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 등 비재무사항에 대한 적극적 투자정보 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7. 3. 10. 기업지배구조 공시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후 기업지배구조 공시는 불이행 시 제재 처분이 부과되지 않는 자율공시 항목으로 운용되었으나, 금융위원회는 자율공시만으로 회사의 의사결정 체계나 내부통제장치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정보가 시장에 충분히 제공되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2018. 3. 단계적으로 기업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는 한편,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 12. 19.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연결기준 자산총액 2 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법인에 대해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2 개월 내에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하는 것이 의무화되었고, 2019. 4. 18.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 공표되었습니다. 나아가 한국거래소는 2020. 3. 기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점검 결과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미흡 사항들의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면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정정공시 대상을 공개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사항, 한국거래소가 공개한 정정공시 대상 및 시사점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사항

- 주주제안권 관련, 기관투자자의 공개서한 관련 사항을 추가
- 배당정책 외 주주환원정책 전체를 설명 대상에 포함
- 상법 등에서 의무화된 사항 이외의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 존재여부 등 추가
- 최고경영자 승계정책과 관련한 구체적 사항 추가
- 이사 등 선임자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불공정거래 행위 전력자 해당 여부 추가
- 사외이사의 재선임 및 보수 결정 시 사외이사에 대한 평가 결과의 충분한 반영 명확화
- 정기 주주총회 개최 6 주 전까지 외부감사인에게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여부 추가

한국거래소가 공개한 정정공시 대상

- 가이드라인 설명요구 사항의 누락
- 세부원칙별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설명 부족
- 핵심지표 준수현황 기재 오류
- 세부원칙의 임의 통합
- 필수기재사항인 현황 표의 임의 변경
- 사외이사들만 참석하는 회의 개최여부에 사외이사로 구성된 위원회 결과 기재
- 사업보고서를 참조하는 방식 등으로 기재 누락

예상효과 및 시사점

- 기관투자자의 공개서한, 주주환원정책,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사외이사 평가결과 등 기업 입장에서 민감한 정보들이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포함되어 공시될 수 있습니다.
- 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되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사항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가이드라인의 세부원칙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전부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작성 방식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정정요구에 불응 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조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의무 공시대상이 향후 전체 상장법인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기관투자자 및 금융기관 ESG 투자 동향

ESG 투자규모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가운데, 2018 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여 기업지배구조 측면에서 ESG 투자를 본격화한 국민연금공단을 필두로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ESG 관련 움직임도 활발합니다. 그린본드에 이어 최근에는 소셜본드 (예컨대, 코로나 19 사태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ESG 채권 발행)도 늘면서 ESG 투자의 다각화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와 언론 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ESG 관련 최근 주요 국내 기관투자자 및 금융기관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8 년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ESG 투자를 본격화하면서 2019. 11.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의결하였고, 2020. 5. 올해 ESG 평가기관으로 대신경제연구소를 선정하였으며, 2020. 11. 아시아기후변화투자그룹(AIGCC)에 가입하여 2022 년까지 ESG 책임투자 적용 자산군 규모를 기금 전체 자산의 절반까지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투자공사는 2018 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후 2019. 6. 정부의 녹색 및 지속가능 채권 발행에 참여하여 그 발행자금을 위탁받아 투자하였고, 2019. 10. 3 억 달러 규모의 ESG 전략펀드를 운용하기 시작하여 글로벌 투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자산에 대한 투자프로세스 및 포트폴리오 운용에 ESG 를 반영하는 ESG Integration(통합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0. 11. 기후변화 관련 세계 최대 국부펀드 협의체인 OPSWF(원플래닛 국부펀드 협의체)에 가입하기도 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2020. 2.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후 ESG 투자를 지속적으로 실행 중입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2019. 12.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후 ESG 주식투자를 하고 있고, 글로벌 인프라 펀드를 통해 전체의 20% 이상을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2017 년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래 의결권 관련 의사결정기구를 신설하고 ESG 투자를 실행하고 있고, 대한지방행정공제회도 2018 년경부터 주식투자 부문에서 ESG 투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직원공제회 및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2019. 11. ESG 전문 평가사인 서스테이널리틱스(Sustainalytics)와 연기금의 사회적 책임투자 역할 등에 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군인공제회 또한 내년부터 환경요소를 시작으로 ESG 요소를 투자에 고려할 계획입니다.

국내 다수의 대형 자산운용사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있고, ESG 평가기관의 평가를 반영하여 투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운용사들이 자체 ESG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의 행보가 이어지고, 채권형 ESG 펀드를 비롯한 각종 ESG 펀드들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국내 다수 금융기관 역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고 ESG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6 대 은행이 2020 년 초부터 약 7 개월간 ESG 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금액은 약 4 조 2 천억 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각 금융그룹 별로 ESG 관련 정책 및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기업 비재무정보(ESG) 공시가 재무성과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Non-financial Information Disclosure on Firm Performance and Firm Value

한국규제학회 / 규제연구 <제 29 권 제 1 호>

김윤경

2020 년 06 월

● 초록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책임이 요구되면서 재무정보 외에도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비재무적 정보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의미하는 ESG 로 이해되고 있으며 기업에게 ESG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논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비재무적 정보의 공시수준이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Bloomberg ESG Disclosure Score 를 활용하여 2011-2017 년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비재무적 정보 공시의 재무적 성과와 기업가치에 대한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자산수익률에 대해 비재무적 정보 공시가 대체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못하여 비재무적 정보공시가 기업의 성과를 개선 또는 악화시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이어서 시장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을 때, 모든 ESG 공시 항목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자본시장이 비재무적 정보에 반응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한편 비재무적 정보가 투자자에게 유의미한 정보가 아닌 것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결과가 비재무적 정보 공시 논의에 있어서 투자자와 이해관계자에게는 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되 기업의 불필요한 부담을 최소화하는 규제를 설계하는 데 시사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해당 로앤비 학회논문 바로가기

※ 상세내용은 로앤비 로그인(유료회원) 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SG

환경 (Environment)

로펌리포트 (LAWNB LAW FIRM REPORTS)

<p>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 - ESG 경영 촉진을 위한 환경정보 공개제도 대상 확대 -</p>	<p>화우</p>	<p>한상구, 신승국, 이광욱, 이근우, 여현동, 황규호</p>	<p>2021.04.01</p>
<p>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환경 모범규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p>	<p>세종</p>	<p>이용국, 김병태, 문경화, 송수영, 김규민</p>	<p>2021.03.31</p>
<p>ESG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의 안전확보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p>	<p>태평양</p>	<p>안현철, 권소담, 남원철, 임혁진</p>	<p>2021.02.22</p>
<p>수소경제 가속화 -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 시행 -</p>	<p>화우</p>	<p>이광욱, 임철근, 이근우, 황희경, 여현동, 황규호</p>	<p>2021.02.05</p>
<p>녹색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 마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 발의</p>	<p>태평양</p>	<p>김현아, 방종식, 구도형, 김현정</p>	<p>2020.12.23</p>
<p>녹색채권 가이드라인 1 - 발행 절차를 중심으로</p>	<p>세종</p>	<p>이용국, 문경화, 송수영, 엄상연, 정유성, 김윤민</p>	<p>2021.01.25</p>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 - ESG 경영 촉진을 위한 환경정보 공개제도 대상 확대 -

법무법인(유) 화우

한상구, 신승국, 이광욱, 이근우, 여현동, 황규호

2021. 4. 1



법무법인(유) 화우
YOON & YANG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 - ESG 경영 촉진을 위한 환경정보 공개제도 대상 확대

“환경정보 공개제도 대상 기업 확대에 관한 조항 및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에 관한 조항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변경된 환경산업 범위 정의 조항 및 환경신기술 이용 장려 등에 관한 조항은 공포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환경정보의 공개 의무가 더 강화되고 이에 기초한 녹색금융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경경영·녹색성장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는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안이 2021. 3. 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법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신기술 사용을 장려할 수 있는 근거 조항 및 녹색경영을 중시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환경정보 공개제도 대상 기업을 확대하기 위한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1. 주요 내용

가. 환경정보 공개제도 대상 기업 확대

국제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를 고려하는 책임투자가 활성화 되고 있고, 특히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는 환경책임투자는 기후변화·환경오염 등의 전 지구적 위기를 대응하는 핵심 수단으로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업의 환경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초기 단계수준에 머물고 있고, 특히, 기업에 대한 환경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원활하지 않은 점이 환경책임투자 활성화에 대한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행 환경기술산업법에서도 환경정보 공개의무를 정하고 있으나,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및 시행령에서 정한 공공기관, 환경영향이 큰 기업(「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42 조 제 5 항에 따른 관리업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 8 조 제 1 항에 따라 지정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에 대해서만 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상장법인에 대한 공개의무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및 환경경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최근 경향을 반영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기업을 환경정보 공개의무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아직 관련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개정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대상기업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 지원 근거 마련

국제적으로 기후·환경문제에 대한 금융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됨에 따라 녹색금융을 국제 금융거래의 기본원칙으로 삼고,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0 년에 제정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 관련 원칙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정책 추진 근거는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금융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녹색경제활동 분류기준 제공과 환경책임투자과 관련한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 환경산업의 범위 확대

환경산업의 정의에 '재활용(업사이클) 산업 등 자원을 순환시켜 환전보전에 기여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개정법이 시행되면, 녹색산업 육성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국가기관 등의 환경신기술 이용 장려 및 신기술인증 유효기간 연장

'환경신기술' 인증 제도는 1999 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제도인 건설신기술 인증제도에 비해 유효기간이 짧고 신기술 활용에 따른 사업 실패 시 담당자에 대한 면책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인해 활용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개정법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신기술 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을 5 년에서 8 년으로 연장하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담당자가 환경신기술이 적용된 환경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였으나, 사업 실패 등으로 인해 해당 기관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담당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면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향후 전망

환경정보 공개제도 대상 기업 확대에 관한 조항 및 금융기관의 환경책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에 관한 조항은 공포 후 6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변경된 환경산업 범위 정의 조항 및 환경신기술 이용 장려 등에 관한 조항은 공포일부터 시행됩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환경정보의 공개 의무가 더 강화되고 이에 기초한 녹색금융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경경영·녹색성장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는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법의 시행으로 확대되는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경우, 정기공시 외에도 '환경보호, 자원절약,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등 관리를 위한 목표 및 주요활동 계획' 등과 같은 환경기술산업법에 정한 정보 공개 의무가 추가되어, 공시 의무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공개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환경 모범규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법무법인(유) 세종

이용국, 김병태, 문경화, 송수영, 김규민

2021. 3. 31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환경 모범규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국내외적으로 기업의 경영 또는 기업에 대한 투자 시, 과거 중시되었던 재무적 지표를 넘어서 기업의 환경적 영향력 등 비재무적 성과를 고려하는 추세가 확대되면서, 더 이상 기업의 경영 일반과 환경 경영을 분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환경과 관련된 규제의 강화, 또는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비용이 기업에 “위험” 요인에 불과하였다면, 현재는 이러한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여 기업의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국·내외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ESG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강화되어 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지배구조원이 제정한 ESG 모범규준이 제정 또는 개정된 지 오래되어 국·내외 동향 및 경영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ESG 모범규준을 개정하기로 하였고, [2021년 3월 10일] ESG 모범규준(안)을 공개하였습니다.

1. 환경 위험 및 기회 요인의 파악·관리에 관한 기준 대폭 신설

● 환경 위험 및 기회의 경영 전략 반영 권고

구 환경 모범규준의 경우 환경 위험의 예방에 방점을 두고, 그에 대한 사전관리 시스템 및 사후조치를 구축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쳤다면, 새로 발표된 환경 모범규준(안)(이하 “**본건 모범규준(안)**”)의 경우 환경 위험뿐만 아니라 환경 기회를 파악하여 이를 기업 경영에 적극 반영하는데 보다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건 모범규준(안)은 환경 관련 규제의 강화, 투자 환경의 변화 등에 대비하여, 기업에게 자원 활용의 효율성 증대, 에너지원의 저탄소화, 연구·개발을 통한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친환경 공급망의 구축, 녹색채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환경 관련 비재무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투자 강화,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환경사고 대비 등 환경경영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회사의 경영전략에 적극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환경 위험 및 기회의 식별·평가·관리 방안 마련 권고

또한 본건 모범규준(안)에서는 일반 환경위험과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위험을 나누어, 전자에 대하여는 환경경영 위험과 기회 식별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각 위험 및 기회요인의 중요성을 평가하여 경영전략을 수립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위험과 관련하여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좌초자산에 대한 재평가, 해당 자산의 저탄소화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친환경 기술·금융 개발 및 활용을 확대 등 기후 변화의 관점에서 경영전략을 새로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마련

그 외에도 본건 모범규준(안)은 PDCA(Plan-Do-Check-Act)를 고려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그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환경목표를 수립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정보 공개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에 관한 기준 강화

● 이해관계자의 범위 구체화

구 환경 모범규준에서는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위해 비공식적 회의, 워크샵, 공청회 등의 개최, 국내외 환경 프로그램 참여 등으로 단순화하여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건 모범규준(안)에서는 이해관계자를 고객, 임직원, 주주, 협력사, 지역사회, 정부 및 시민단체, 국내외 투자자 등으로 구체화 하고, 기업에게 환경적 영향에 관한 이해관계자를 파악하여 해당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기업의 경영활동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환경 정보 공개 의무의 구체화

또한 과거에는 단순히 환경 관련 정보의 공개 의무만 부과하였다면, 본건 모범규준(안)에서는 보고의 범위를 국내 또는 국내외 전 사업장으로 설정하고, 보고대상을 1년 이하로 설정하며, 연간 혹은 분기 별과 같이 정기적으로 시의적절하게 환경정보를 공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환경 정보의 공개창구 역시 사업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홈페이지 등 불특정 이해관계자가 접근할 수 있는 채널을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3. 유해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기준 대폭 신설

- 본건 모범규준(안)은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규정을 대폭 신설하여, 기업에게 (i) 기업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에 관련된 세부 정보를 공유하고, (ii) 화학물질 인벤토리를 구축하며, (iii) 유해화학물질을 저독성 원·부재료로 대체하거나 관련 설비나 공정을 개선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의 이용 및 배출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iv) 화학물질 법규의 준수와 관련 규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학물질관리법의 시행 이후 화학물질 관련 사고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화학사고의 경우 발생 시 그 피해의 규모 및 범위가 막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 환경모범 기준을 보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4. 환경 모범규준(안) 개정의 시사점

국내외적으로 기업의 경영 또는 기업에 대한 투자 시, 과거 중시되었던 재무적 지표를 넘어서 기업의 환경적 영향력 등 비재무적 성과를 고려하는 추세가 확대되면서, 더 이상 기업의 경영 일반과 환경 경영을 분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환경과 관련된 규제의 강화, 또는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비용이 기업에 "위험" 요인에 불과하였다면, 현재는 이러한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여 기업의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개정 환경 모범규준(안)은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기업이 환경 위험 속에서 기회를 파악하고 활용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체계 및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어떻게 기업 경영 일반에 반영하며, 활용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경 모범규준(안)의 권고·지침은 향후 환경 관련 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는 의무화 될 가능성이 상당한바, 기업으로서는 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SG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확보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법무법인(유한)태평양

안현철, 권소담, 남원철, 임혁진

2021. 2. 22

bkl 법무법인(유한)태평양

ESG 세계 최초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확보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수소법의 시행에 따라 지원을 받기 위한 수소전문기업이 생겨나고,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등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됨에 따라 수소차 등 민간분야에서의 수요가 증가하고, 정부가 공공기관 등에게 연료전지 설치계획을 요청할 수 있음에 따라 공공분야의 수소연료에 대한 수요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프라 형성 및 수요 창출에 따라 수소 산업에 관한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올해 2월 5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수소경제란 수소를 주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산업구조를 의미하며, 그에 요구되는 에너지 인프라 및 경제전반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현재 미국·일본·EU 등 주요 선진국은 수소경제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소경제 추진을 위한 단일 근거법령을 제정하지는 아니하였는데, 한국은 20대 국회에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 통과됨으로써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일 근거법령을 제정한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수소법은 (i) 저압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ii) 수소경제위원회 및 각종 전담기관 등 수소경제를 이행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하였으며, (iii) 수소전문기업의 육성·지원, 인력양성·표준화 사업 지원 등 수소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2021. 2. 5.부터 시행된 수소법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립니다(안전관리 등에 관한 일부 규정은 2022. 2. 5.부터 시행).

1. 주요 내용

(1)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의 수립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수소법 제 5 조).

(2) 수소경제위원회 설치

-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수소경제위원회를 설치하고, 수소경제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실무추진단을 둘 수 있도록 함(수소법 제 6 조).

(3)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재원의 확충

- 정부는 기본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및 대한석탄공사 등으로 하여금 수소경제 이행에 관한 사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음 (수소법 제 7 조, 동법 시행령 제 16 조).

(4) 수소전문기업에 대한 지원

- 정부는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i)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지원 및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ii) 고가장비의 공동 사용, (iii) 수소산업 관련 우수한 기술 등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iv) 수소특화단지로의 우선 입주 기회 제공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 (i) 수소사업과 관련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ii) 국제협력 및 기술교류, (iii)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iv) 국내외 판로 확보, (v) 지식재산권 출원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또는 용자할 수 있도록 함(수소법 제 9 조 및 제 10 조, 동법 시행령 제 17 조 및 제 19 조 제 3 항).
- 또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소전문기업에 대하여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고, 수소산업 관련 연구개발 등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면제할 수 있음(수소법 제 17 조). 그리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수소전문기업에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음(수소법 제 18 조).
- 수소법 제 2 조 제 3 호는 수소전문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수소법 시행령은 아래 A, B 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수소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수소전문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받아야 함(수소법 제 11 조).

A.총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7 조에 따른 방법으로 산출한 것을 말함) 중 수소사업(수소의 생산·저장·운송·충전·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부품·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과 관련된 사업)과 관련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1. 총매출액이 1,000 억 이상인 기업: 100 분의 10 이상
2. 총매출액이 300 억 이상 1,000 억 미만인 기업: 100 분의 20 이상
3. 총매출액이 100 억 이상 300 억 미만인 기업: 100 분의 30 이상
4. 총매출액이 50 억 이상 100 억 미만인 기업: 100 분의 40 이상
5. 총매출액이 20 억 이상 50 억 미만인 기업: 100 분의 50 이상

B.총매출액 대비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이때, 수소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에 대한 투자금액은 (i)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에 따른 비용 및 (ii) (i)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함.

- 1. 총매출액이 1,000 억 이상인 기업: 100 분의 3 이상
 - 2. 총매출액이 300 억 이상 1,000 억 미만인 기업: 100 분의 5 이상
 - 3. 총매출액이 100 억 이상 300 억 미만인 기업: 100 분의 7 이상
 - 4. 총매출액이 50 억 이상 100 억 미만인 기업: 100 분의 10 이상
 - 5. 총매출액이 20 억 이상 50 억 미만인 기업: 100 분의 15 이상
- 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법률 개정 관련

(5) 수소전문투자회사

- 수소전문투자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로 보고, 수소전문투자회사는 (i) 자본금의 100 분의 51 이상의 금액을 수소전문기업에 투자하고, (ii) 사용하고 남은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남은 자산의 100 분의 50 이상을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또는 국공채의 매입으로 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수소법 제 13 조 내지 제 15 조, 동법 시행령 제 24 조).
- 공공자금관리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등이 수소전문기업에 투자되거나 수소전문투자회사에 출자될 수 있도록 규정함(수소법 제 16 조, 동법 시행령 제 25 조)

(6)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 고속국도에 설치하는 휴게시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시설 등의 운영자(이하 "시설운영자")에게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설비 등에 설치된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설운영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설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여야 함(수소법 제 2 조 제 7 호 및 제 19 조, 동법 시행령 제 26 조, 동법 시행규칙 제 2 조 제 2 항).
- 그리고, 수소 생산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는 해당 시설의 설치 이전에 수소의 생산 또는 공급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단, 부칙에 따라 해당 의무는 2029 년 12 월 31 일까지 유효함(수소법 제 20 조).
-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시설운영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사업자 등에게 연료전지 설치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연료전지 설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수소법 제 21 조, 동법 시행령 제 27 조).

(7)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실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특화단지를 지정하여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수소법 제 22 조)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된 지역에서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의 활성화 등의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수소법 제 24 조)

(8)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천연가스 가격안정성 확보 노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료전지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천연가스의 가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고,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하여 연료전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 요금을 별도로 정하도록 할 수 있음(수소법 제 25 조)

(9)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수소관련 제품 등의 표준화, 수소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 지원,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사회적 공감대 형성,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수소사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수소산업진흥전담기관, 수소유통전담기관,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수소법 제 26 조 내지 제 35 조)

(10) 수소 안전관리

- 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소용품 제조사업 허가, 외국수소용품 제조등록, 수소용품 제조사업자의 안전관리규정 제정 및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수소용품 검사 및 안전성 확보(리콜), 안전교육, 수소연료사용시설의 검사 등 수소의 안전관리사항을 규정함(수소법 제 36 조 내지 제 49 조)

(11) 수소판매가격의 보고

- 수소연료공급시설 중 연료전지를 장착한 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통하여 수소를 판매하는 수소사업자는 한국가스공사에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함(수소법 제 50 조, 제 56 조, 동법 시행령 제 57 조).

2. 파급효과 및 대응전략

정부는 2019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서 수소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수소법은 이러한 로드맵에 따른 수소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소전문기업을 육성·지원하고,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수소 생산 및 공급시스템을 조성하는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소법의 시행에 따라 지원을 받기 위한 수소전문기업이 생겨나고,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등에 수소충전소가 설치됨에 따라 수소차 등 민간분야에서의 수요가 증가하고, 정부가 공공기관 등에게 연료전지 설치계획을 요청할 수 있음에 따라 공공분야의 수소연료에 대한 수요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인프라 형성 및 수요 창출에 따라 수소 산업에 관한 투자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각 기업은 수소법 제정에 따라 변화된 사업환경에 어떻게 대응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인지를 사전에 점검하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기관과 소통하여 정책 방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후속 입법 과정에서 관련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수소경제 가속화 -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 시행 -

법무법인(유) 화우

이광욱, 임철근, 이근우, 황희경, 여현동, 황규호

2021. 2. 5



법무법인(유) 화우
YOON & YANG

수소경제 가속화 -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 시행 -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 2021. 2. 5.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수소법의 시행에 따라, 에너지원으로서 탄화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탄소경제'에서 수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제체제인 '수소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수소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및 그 중 참고할만한 사항 등을 설명드립니다.”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이 2021. 2. 5.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수소법의 시행에 따라, 에너지원으로서 탄화수소를 기반으로 하는 '탄소경제'에서 수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경제체제인 '수소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수소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 및 그 중 참고할만한 사항 등을 설명드립니다.

1. 수소법 시행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주요 제도

(1)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수소법 제 11 조)

수소전문기업은 총 매출액 중 수소사업 관련 매출액 또는 수소 사업 관련 R&D 등 투자금액 비중이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기업입니다. 수소전문기업으로 확인받으면 수소법 제 9 조 등에 따라 정부,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수소융합얼라이언스)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수소법 제 19 조 및 제 21 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 물류단지, 고속국도 휴게시설, LPG 충전소 및 주유소 등의 시설운영자에게 수소충전소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소충전소 설치 요청 대상기관 및 지방공기업, 병원·학교 등의 시설 운영자에게 연료전지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받은 시설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다만 이를 위반하더라도 별도의 벌칙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수소법 제 50 조)

연료전지를 장착한 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통하여 수소를 판매하는 수소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판매가격을 보고해야 합니다.

2. 기업의 참고 사항

(1) 수소전문기업 선정 적극 고려

수소전문기업으로 선정되면 개발된 기술의 실증, 인력지원, 금융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에 반해, R&D 투자의 경우 그 지정 기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습니다. 특히, R&D의 경우 그 범위가 '수소사업 관련 연구개발'로 넓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수소산업 관련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예정하고 있다면, 아래 기준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매출액	수소 매출액 비중	수소 R&D 투자 비중
1,000 억원 이상	100 분의 10 이상	100 분의 3 이상
300 억원 ~ 1,000 억원 미만	100 분의 20 이상	100 분의 5 이상
100 억원 ~ 300 억원 미만	100 분의 30 이상	100 분의 7 이상
50 억원 ~ 100 억원 미만	100 분의 40 이상	100 분의 10 이상
20 억원 ~ 50 억원 미만	100 분의 50 이상	100 분의 15 이상

(2) RE100 및 ESG 경영 기여

수소법의 시행으로 인해 향후 '신재생에너지 및 수전해설비를 이용하여 생산된 수소'(소위 '그린수소') 및 이를 사용하는 연료전지를 조합한 발전 시스템이 상용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전기는 'RE100 달성' 및 'ESG 경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3) 기존설비에 대한 검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던 영역(10 기압 이하)의 수소용품이나 수소를 사용하는 시설(수전해 설비, 추출기, 연료전지, 저압탱크 등)의 경우, 기존에는 별도의 규제 없이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소법의 시행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현행 액화석유가스법에 준하여 규제하고 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수소용품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외 없이 허가나 등록을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 마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 발의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김현아, 방종식, 구도형, 김현정이광욱, 임철근, 이근우, 황희경, 여현동, 황규호

2020. 12. 23

bkl 법무법인(유한)태평양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방안 마련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 발의

“국내 금융사들 역시 신재생에너지, 그린스마트스쿨,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녹색사업에 금융지원을 계획하거나,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신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채권 인수 사업 참여를 중단하는 등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고 있는 추세입니다. 녹색금융촉진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더욱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ESG 원칙에 부합하는 금융기관들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 역시 ESG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21 대 국회에서는 지난 2020. 11. 13.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통해 국토의 지속가능하고 균형적인 발전과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을 촉진하고, 녹색금융공사를 설립하여 그린뉴딜의 초기 리스크를 국가 주도로 감내하면서 녹색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발전, 성장시키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 특별법안」(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대표발의, 이하 “녹색금융촉진 특별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녹색금융촉진 특별법안은 2020. 11. 11. 발의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하 “탈탄소사회 기본법안”) 제 52 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녹색금융 촉진의 기본원칙,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의 수립, 금융기관의 녹색금융 촉진을 위한 새로운 전략·목표·이행계획 수립 및 금융상품 개발 노력의무, 녹색금융 촉진을 위한 녹색금융공사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SG 이슈와 관련하여서도 “책임투자”를 명확히 정의하고, “녹색분류체계”를 수립한 점, 녹색금융 촉진의 기본원칙 및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국제적인 ESG 기준에 따라 환경사회영향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공개를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녹색금융촉진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립니다.

1. 주요 내용

(1) 목적

녹색금융촉진 특별법안은 녹색금융 촉진을 통해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저탄소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추구함으로써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한 고용창출, 금융산업 및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 1 조).

(2) 기본원칙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촉진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합니다(제 3 조).

-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민간이 적극 참여하여 녹색금융을 촉진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

- 한국산업은행 등 금융기관은 기후·환경 관련 위험이 가져올 손실을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금융위험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녹색금융은 책임투자 방식으로 투자되어야 하며, 관련 금융행위에 따른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정보를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투명하게 제공할 것
- 녹색분류체계의 기준을 벗어난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금융지원을 축소할 것(다만, 본 조항의 적용은 녹색분류체계 공표시점까지 유보됨)

(3)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 수립 및 녹색분류체계 마련

금융위원회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제 5 조 제 1 항).
녹색금융 촉진 기본계획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됩니다(제 5 조 제 2 항).

- 녹색금융의 기본방향과 목표
- 녹색금융 관련 국내외 환경 분석
- 녹색금융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 조달방안, 추진전략 및 중점추진과제
- 그 밖에 녹색금융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환경부장관은 금융위원장과 협의의 통해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하여 공표하고 이를 3년마다 보완하여야 합니다(제 5 조 제 4 항).

(4) 녹색금융 촉진을 위한 공공금융지원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공공금융기관은 탄소중립기술 및 산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소연료공급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분야 및 녹색분류체계상의 경제활동(이하 “**녹색금융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고,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보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은 녹색금융 분야에 우선적으로 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제 6 조).

(5) 금융기관의 책무 및 화석연료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제한

금융기관은 녹색금융 촉진을 위한 새로운 전략·목표·이행계획 수립 및 금융상품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은 기후 및 환경에 대한 금융지원에 수반되는 위험과 기회를 고려하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대응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관련 위원회 설립 및 운영 등 지배구조를 강화하고 환경·사회영향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제 8 조). 또한 금융기관은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신규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화석연료 절감 계획 또는 녹색분류체계에 맞는 활동을 검토하여 금융서비스 제공 여부 및 금융서비스 제공 규모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제 9 조).

(6) 녹색채권 등 채권 발행의 특례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공공기관등은 녹색금융 촉진을 위하여 (i) 녹색분류체계상의 사업에 대한 금융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되는 녹색채권, (ii) 책임투자를 목적으로 발행되는 사회적채권, (iii) 그 밖에 책임투자과 관련된 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위 각 채권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정부 및 공공기관은 외부인증 등 위 각 채권 발행에 수반되는 행정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 10 조).

(7) 녹색금융공사의 설립 및 그 업무

기후위기 대응관련 자금공급 등 녹색금융 촉진을 위해서 아래 표와 같이 한국녹색금융공사(이하 "공사")를 설립하고(제 11 조), 공사는 녹색금융촉진 특별법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녹색금융 분야에 자금을 공급합니다(제 34 조). 이때, 정부는 배출권을 유상으로 할당하는 경우 그 수입의 일부를 공사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습니다(부칙 제 3 조).

공사는 자금공급 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녹색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부는 녹색금융채권의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은 후 보증할 수 있습니다. 녹색금융채권의 발행액, 공사가 보증한 사채 및 채권의 현재액과 보증하거나 인수한 채무의 현재액의 합계액은 공사의 (i) 납입자본금과 (ii) 이익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 외의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10 배를 초과할 수 없으나, 위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녹색금융채권의 현재액 등은 이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제 36 조).

설립목적	기후위기 대응관련 자금공급 등 녹색금융 촉진
설립 자본금	5 조원
출자기관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은행, 국제기구 등
금융서비스 분야	탄소중립기술 및 산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 환경친화적 자동차, 수소연료공급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분야 및 녹색분류체계상의 경제활동
금융방식	자금의 대출 및 이차보전용자,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의 응모·인수 및 투자,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신용위험의 유동화, 사업의 발굴·추진·금융자문, 녹색금융·기후위기 관련 국제협력, 온실가스 배출권시장 조성자의 업무 및 배출권에 대한 투자·중개·유동화, 녹색금융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 기금의 관리 및 운용, 보험 등

2. 파급효과 및 영향 분석

과거 우리나라의 녹색펀드 관련 실적이 저조했던 원인으로는 녹색사업에 대해 금융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한 전문성 부족과, 10~20년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녹색산업에 펀드 운용 시 7~8년 만에 청산을 해야 하는 장기전략 부재, 그리고 정부 및 공공기관과 사업실행 담당 민간금융기관의 이해 상충으로 인한 이중 수수료 발생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녹색금융촉진 특별법안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사의 출자와 설립을 주도한 뒤 추가로 민간·정책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출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안정적으로 녹색산업 발굴과 투자를 전담하는 녹색금융 전담 조직이 만들어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금융사들 역시 신재생에너지, 그린스마트스쿨,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 녹색사업에 금융지원을 계획하거나, 국내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신규 프로젝트 파이낸싱(PF)·채권 인수 사업 참여를 중단하는 등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고 있는 추세입니다. 녹색금융촉진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더욱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ESG 원칙에 부합하는 금융기관들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 역시 ESG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1 - 발행 절차를 중심으로

법무법인(유) 세종

이용국, 문경화, 송수영, 엄상연, 정유성, 김윤민

2021. 1. 25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1 - 발행 절차를 중심으로

“기관투자자들의 ESG 관련 투자 그 중에서도 환경(Environmental) 관련 투자가 확대 추세이나, 특히 국내에서 어떠한 투자가 환경 관련 투자인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이 있어 왔습니다. 금번 가이드라인은 시장 관계자들에게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서 국제자본시장협회(ICMA)가 발표한 녹색채권원칙(GBP)을 기반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상황을 반영한 녹색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구체적 예시는 어떠한 사업이 환경목표와의 관련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판단시 참고할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의 녹색채권(Green Bond)은 수출입은행이 2013년 국내 최초로 이를 발행한 이래 대체로 신용도가 좋은 공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후 (i) 기업들의 친환경, 저탄소 관련 사업에의 투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ii) 국민연금 등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iii) 정부의 2020년 7월 그린뉴딜 종합계획 발표,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비전 채택 등으로 녹색산업을 위한 녹색금융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녹색채권의 “국내” 발행과 관련하여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녹색채권 발행 시장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녹색채권 국내 발행 절차에 적용되는 한국형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환경부, 금융위원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거래소는 지난 2020년 12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비록 가이드라인의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녹색채권의 발행, 투자 및 평가와 관련한 시장참여자들의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녹색채권의 정의

가이드라인은 녹색채권을 (i) 발행 자금이 아래 6가지 환경목표에 부합하는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되며, (ii) 녹색채권원칙(Green Bond Principle, GBP)의 4가지 핵심요소인 ① 조달자금의 사용, ②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 과정, ③ 조달자금 관리, ④ 사후보고의 모든 의무사항을 충족하는 채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녹색 프로젝트’가 충족하여야 하는 6가지 환경목표는 ① 기후변화 완화, ② 기후변화 적응, ③ 천연자원 보전, ④ 생물다양성 보전, ⑤ 오염방지·관리, ⑥ 순환자원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녹색채권 관리체계(Green Bond Framework, GBF)

가이드라인은 녹색채권 발행자가 자율적으로 녹색채권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녹색채권 발행 등을 관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녹색채권 관리체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녹색채권 관리체계(Green Bond Framework, GBF)

가이드라인은 녹색채권 발행자가 자율적으로 녹색채권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이에 따라 녹색채권 발행 등을 관리할 것을 권고합니다. 녹색채권 관리체계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녹색채권 발행개요:** 녹색채권 발행의 목적, 발행자의 녹색경영 전략과 환경개선 목표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할 것이 권고됩니다.
- **조달자금의 사용:** 녹색채권을 통해 조달되는 자금은 환경개선 효과를 가져오는 녹색 프로젝트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녹색 프로젝트는 위에서 열거한 6 가지 환경목표 중 적어도 하나 이상에 기여해야 하고, 이 때 다른 목표와의 상충여부는 없는지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가이드라인은 국내 환경 관련 법 위반여부를 판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이에 추가하여 최소한의 인권침해 예방조치(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노동인권과 기본원칙에 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문)를 적용하여 환경 외적인 요소를 위반하는지도 검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녹색프로젝트는 녹색채권원칙(GBP)에서 정한 10 가지 녹색프로젝트 범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가이드라인은 우선 국제자본시장협회(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 ICMS)에서 발간한 녹색채권원칙(GBP)을 차용하여 녹색프로젝트를 분류하고 있으며, 향후 환경부가 개발 중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어떠한 경제활동이 환경목적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분류 기준)가 확정되면 녹색프로젝트 분류체계가 개정될 예정입니다.
-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 절차:** 녹색채권 발행자는 녹색채권 관리체계(GBF)를 통하여 (i) 환경개선 목표, (ii) 녹색프로젝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iii) 해당 프로젝트의 잠재적인 환경·사회적 위험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적용된 절차, 적격성 판단 기준 및 배제 기준을 투자자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 **조달자금 관리:** 녹색채권 발행자는 녹색 채권 순조달액 또는 그 상당액을 내부 통제 절차를 통해 추적 가능한 적절한 방법으로 관리하여 녹색채권 발행자금이 녹색프로젝트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사후보고:** 녹색채권 발행자는 녹색채권으로 조달한 자금 사용처에 대한 최신 정보와 예상되는 환경개선 효과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합니다.

외부기관의 검토

가이드라인은 녹색채권 발행과 관련한 외부기관의 검토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녹색채권 발행 전:** 녹색채권 발행자는 발행자의 녹색채권 관리체계(GBF)가 녹색채권원칙(GBP)의 4 가지 핵심요소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외부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 **녹색채권 발행 후:** 녹색채권 발행자는 자금관리 방법, 조달자금 사용처, 환경개선 효과 등의 확인을 위해 발행자가 작성하는 보고서(자금배분 보고서 및 영향보고서)에 대해서 외부 검토를 받을 것이 권고됩니다.

<시사점>

기관투자자들의 ESG 관련 투자 그 중에서도 환경(Environmental) 관련 투자가 확대 추세이나, 특히 국내에서 어떠한 투자가 환경 관련 투자인지에 대하여는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이 있어 왔습니다. 금번 가이드라인은 시장 관계자들에게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가이드라인에서 국제자본시장협회(ICMA)가 발표한 녹색채권원칙(GBP)을 기반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한민국 상황을 반영한 녹색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구체적 예시는 어떠한 사업이 환경목표와의 관련성을 가지는가에 대한 판단시 참고할만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환경부가 개발 중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가 2021년 상반기 중 발표될 예정인바, 해당 내용이 확정되면 가이드라인도 개정될 것이므로 추후 이에 관하여도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II. 해외

로펌리포트 (LAWNB LAW FIRM REPORTS)

ESG 브리핑

- 2021년 5월 2주
- 2021년 5월 1주
- 2021년 4월 4주
- 2021년 4월 3주
- 2021년 4월 2주
- 2021년 4월 1주

지평	임성택, 민창욱	2021.05.11
	임성택, 민창욱	2021.05.04
	임성택, 민창욱	2021.04.27
	임성택, 민창욱, 정진	2021.04.20
	임성택, 민창욱, 정진	2021.04.13
	임성택, 민창욱, 정진	2021.04.06

ESG 브리핑

법무법인(유) 지평

2021년 5월 1~2주 및 4월 4주, 임성택, 민창욱

2021년 4월 1~3주, 임성택, 민창욱, 정진

JIPYONG 법무법인 지평

ESG 브리핑

"법무법인 지평의 ESG 관련 주간 브리핑을 모은 리포트입니다."

- 2021년 5월 2주 -

공익추구기업(PBC: Public Benefit Corporation)이 실무와 주주총회 투표에서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Facebook,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 '세이온클라이밋(say-on-climate)' 투표에 대한 최신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01. 기업 CEO 들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를 내세우자, 공익추구기업 추진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CEO 들이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추구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서자, 기업의 책임 문제를 우려하는 주주들과 의원들은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일부는 전통적인 미국 기업 구조를 따르고 기업 주주들이 설정한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직원, 지역사회, 공급업체 및 환경을 고려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며, 그에 대한 대안으로, "공익추구기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올해 최초로 상장기업들의 공익추구기업 전환을 요구하는 주주제안이 나왔음. 공익추구기업이란 미국 델라웨어 주를 포함한 수십 개 주에서 허용된 기업 구조로서, 영리기업으로 하여금 법적으로 정의된 기업 목표에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을 명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주중심주의(shareholder primacy)라는 법적 의무로부터 이사회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의미함. 델라웨어에서만 3,000 개 이상의 공익추구기업이 설립되었으며, 그 수는 늘어나고 있음.
- 16 개사에 보낸 해당 주주제안은, 기업의 목적을 주주뿐만이 아닌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여로 재 정의했던 2019년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의 성명을 준수하기 위한 기업의 변화를 촉구함. 그러나, 지금까지 해당 안건이 가장 많은 지지를 얻은 경우는 Wells Fargo 에서 3%의 찬성표를 득한 경우뿐이며, 이에 해당 안건에 대한 주주들의 열의는 약화되었음.
- 공모시장에서 공익추구기업은 여전히 굳건히 자리잡고 있음. 지난 2월, Veeva Systems 라는 미국 상장기업이 미국 최초로 공익추구기업으로 전환하였음. 이 과정은 주주 동의가 필요한데, Veeva Systems 은 해당 전환을 위한 주주 투표에서 99%의 동의를 얻었음.
- 좌파 성향의 연방 의원들은 공익추구기업이나 그와 유사한 구조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민주당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은 미국 대기업들로 하여금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책무를 약속하는 연방 인가(federal charter)를 취득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는데, 이는 공익추구기업 모델에서 착안하고 있음.

- 캘리포니아 주 민주당 소속 마크 드너시에 하원의원은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상정된, 사회적 목적 기업(Social Purpose Corporation) 선택권을 창설하는 법안을 지지했음.

02. IT 기업들도 정부에게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보고 의무화를 촉구하기 시작함

거대 IT 기업인 Apple, Salesforce 및 HP 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모든 직·간접적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기업공시를 의무화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해당 기업들의 발표는 SEC 가 규정을 수립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관련 보고에 대한 공공 의견 수렴(public input)을 진행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가 2030년까지 미국 탄소배출을 절반 감축한다는 목표치를 제시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 Apple 의 아르빈 가네산은 4월 13일 성명을 통해, 기업들은 탄소배출 측정을 통해 탈탄소 목표를 위한 기업들의 탄소발자국을 이해하고 이를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힘. Apple 의 이러한 발언은 미국 주요 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기후변화 공시 규칙을 지지하는 움직임. 일반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은 이러한 의무화 규칙 입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ESG 지지자는 의무화를 촉구하고 있음.
- Apple 과 Salesforce 는 SEC 가, 기업의 전력 사용부터 기업들이 판매하는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이르기까지 1~3 영역을 포괄하는, 감사필 탄소배출 보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또한 HP 는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공시 의무화를 촉구하였음. 위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탄소배출 데이터를 보고하며 이를 통하여 연방 규칙제정에 있어 정보의 일관성, 비교가능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 SEC 는 3월 엘리슨 해런 리 SEC 위원장 대리 시절 시작했던 계획인 기후변화 관련 보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고 있음. 의견 제출 기간은 90일임. 상원의 인준을 받은 신임 SEC 위원장은 게리 겐슬러 위원장임.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인준 청문회에서 기후변화 공시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SEC 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 있다고 밝혔음.
- Ceres 의 스티븐 로스테인은,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정부 의무화 규정에 반대하는데, IT 기업들의 이러한 발표는 변혁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함. Ceres 는 공개적으로 공시 규칙을 지지하는 상장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03. 의결권행사 자문사 Glass Lewis, 전세계적으로 주주들이 내세우는 '세이온클라이밋(say-on-climate)'에 반대

기업의 기후변화 관련 전략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주주권고투표(advisory shareholder vote)를 일반적인 관행으로 수립하고자 했던 전세계적인 주주들의 노력이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주주 의결권에 대한 기관투자자 대상 자문을 전문으로 하는 자문사 Glass Lewis 가 이를 반대한 것입니다:

- Glass Lewis 의 코트니 키팅스 ESG 리서치 디렉터는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Glass Lewis 는 일반적으로 주주들에게 '세이온클라이밋' 투표 수립에 반대표를 던지라고 권고할 것이라고 밝힘. 키팅스 리서치 디렉터는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계획을 주주투표에 부치는 경우, 주주들이 회사 전략에 대해 기계적으로 승인하거나, 기후변화 관련 조치 세부 사항이 예기치 못한 지지를 받거나, 기후변화 관련 조치가 실패하는 경우, 현재 주주들의 지지로 인해 미래 주주 관련 소송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는 문제 등 예기치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했음.

- 국제적인 자문사 Glass Lewis 에 따르면 '세이온클라이밋'은 올해 주총시즌에서 "아마 가장 지배적인" 사안임. Glass Lewis 는 투자자, 기업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내년 공식 입장을 성문화할 계획이며, 그 때까지는 일반적으로 '세이온클라이밋'에 반대할 것을 권고할 계획임.
- '세이온클라이밋'은 영국 헤지펀드 매니저인 크리스토퍼 혼과 그의 아동투자기금재단(Children's Investment Fund Foundation)이 시작했으며,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비영리기업 As You Sow 가 옹호해 왔음. Worthington Industries, Booking Holdings, Monster Beverage 및 Union Pacific 에서는 기업들이 연례적으로 기후변화 전환계획이나, 세이온클라이밋의 사전 단계, 또는 연례 투표를 개최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주주제안이 제출되었음.
- 유럽에서는 '세이온클라이밋'은 진척을 이루고 있음. Shell 과 Unilever 를 포함한 일부 기업들은 투표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Shell 은 5 월 18 일 자사의 에너지 전환 전략에 대한 주주투표를 실시할 계획임. Glass Lewis 의 의결권 보고서(Proxy Paper)에 따르면 Glass Lewis 는 경영진을 지지할 것을 권고하였음.

04. Facebook 감독위원회의 트럼프 차단 결정에 아무도 만족하지 못함에 따라, Facebook 은 여전히 규제당국 및 주주들의 압박을 받고 있음

Facebook 감독위원회는 1 월 6 일 미국 의회 폭동 사태 이후 Facebook 이 도입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에 대한 무기한 계정 정지조치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감독위원회는 Facebook 이 내린 무기한 정지조치는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며, 이에 6 개월 내로 트럼프 전 대통령 계정 정지조치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해당 결정은 좌우 양측으로부터 반발을 샀으며, 6 개월이라는 기한 설정으로 인해 Facebook 에 대한 규제당국 및 주주들의 압박은 사라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 Facebook 은 감독위원회에 결정을 맡김으로써 의사결정에서 거리를 두려 했으나, 이러한 노력은 Facebook 에 대한 압박 진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음. 감독위원회는 Facebook 이 명확한 벌칙을 적용하고 합리화하며 Facebook 의 자체적인 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밝힘.
- 이에 대한 반응은 Facebook 및 기타 SNS 회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ESG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 해당 리스크에는 규제 가능성, 법률 문제, 이미지 훼손 등이 있음. 주주들은 Facebook 이 이사회를 교체하고 및 잘못된 정보, 폭력, 혐오발언 및 괴롭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압박하고 있음.

기타뉴스

- ESG 와 신용등급: S&P Global Ratings 는 보고서를 통해 공공기업들의 신용등급에 ESG 요소의 영향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음. S&P 는 기후변화가 재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S&P Global Ratings 는 작년 산불 관련 이슈로 인해 PG&E 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고, 폭풍 관련 리스크로 인해 Entergy New Orleans 의 신용등급 역시 하향했다고 밝혔음.
- E&E News 보도에 따르면, Berkshire Hathaway 의 CEO 이자 억만장자인 워런 버핏은 그의 회사 Berkshire Hathaway 로 하여금 투자자들에게 기후변화, 다양성 및 포용성 노력을 보고하도록 하는 주주제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기업 소유권을 행사했음. 9 조 달러 규모의 투자자산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 BlackRock 은 메모를 통해, Blackrock 은 기후변화와 다양성에 대한 주주제안을 지지하며, Berkshire Hathaway 는 ESG 의 중대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Blackrock 은, 특히 기후변화 문제와 관련하여, 주주들의 더 많은 요구를 지지할 것이라고 약속했음.

- 2021년 5월 1주 -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이사회 다양성과 기후변화 관련 조치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발표된 로비 보고서(lobbying report)에 따르면, ESG에 관한 로비를 하는 그룹들의 보고서가 점진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1. 이사회 다양성 증대에 대한 주주제안이 상정되는 가운데, 미 하원 의원들이 이사회 다양성 법안을 추진함

하원 의원들이 상장기업들로 하여금 이사회 다양성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현 의회에서 해당 법안이 입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방 정책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민간 부문과 각 주들은 자체적인 이사회 다양성 규제를 추진해 왔으나, 일부 연구들에 따르면 강화된 규제를 도입하는 경우에도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 지지난 주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HR1277 법안을 통과시켰음. 해당 법안은 상장기업들로 하여금 매년 이사회 이사, 이사회후보 및 회사 임원들의 성별, 인종, 민족, 재향군인신분 여부 및 회사 지도부의 다양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계획을 보고하게 하는 법안임.
- 미국에서 이사회 성별다양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평등과는 거리가 먼 상황임.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 이사회들의 인종 및 민족다양성은 미국 인구의 다양성 비율과 큰 격차가 있음.
- 나스닥(NASDAQ)은 기업들로 하여금 다양성을 대표하는 이사회 2인을 선임하거나 주주들에게 이를 선임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준수 또는 설명(Comply-or-explain)' 방식의 규제를 제안하였음. 현재 나스닥은 상장기업들에게 해당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규제당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음. 캐나다는 이사회 성별다양성에 대해 '준수 또는 설명' 방식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음. 최근 컨퍼런스 보드 캐나다 본부(Conference Board of Canada)의 연구에 따르면 해당 규제를 도입한 이후 이사회 여성의 수가 증가하였으나, 이사회 여성 비율의 증가율에는 큰 변화가 없었음.
-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이사회 다양성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의 기업들에게 이사회에 여성, 유색인종 또는 LGBT 이사회를 포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해당 법안을 지지했던 주 의회의원들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상황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음.

02. 민주당 의원들이 의회를 장악하며, ESG 로비에 대한 보고가 늘어났음

민주당 의원들이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하며, 2021년 1분기에 미국 관료 및 의원들과 ESG를 논의한 로비스트들이 전례 없이 증가하였습니다:

- 본지가 1999년부터 제출된 보고서들을 살펴본 결과, "ESG"라는 단어는 2018년 중반에 최초로 언급된 이래 각 분기별 보고서에서 꾸준히 등장해왔음. 2021년 1분기에는 기업 로비 공시에서 37개 보고서가 ESG를 언급하였는데, 2020년 각 분기별 보고서들보다 증가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로비 보고서들은 세부 내용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몇몇 로비 보고서들은 ESG를 하나의 용어로 사용하는 대신 지속가능성이나 특정 ESG 사안을 언급함. ESG가 기업계에서 주류로 자리 잡고, 주요한 연방 정책 사안으로 떠오르며 ESG에 대한 언급이 늘어났음. ESG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로비 보고서에서 최초로 언급되었는데,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ESG 제안을 반대하였음. 2018년 민주당이 하원 다수를 차지하며 ESG 공시 의무화를 우선 순위로 상정하기 시작하였음. 현재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며, ESG는 의회 청문회 및 금융 당국과의 회의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음.

03. 상원 의원들, 메탄가스 규제를 오바마 정부 시절 기준으로 복원하고자 결의안 가결

지난 주 수요일, 미국 상원은 트럼프 전 정부가 변경했던 메탄가스 규제 개정규칙을 폐지하고자 결의안을 가결하였습니다. 해당 개정법은 오바마 정부가 수립했던 규칙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말에 확정했던 기후변화 및 ESG 관련 규제들을 추가적으로 겨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상원은 메탄가스 배출 제한 및 화석 연료 시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 제한을 골자로 하는 오바마 정부 규칙을 복원하기 위한 결의안을 52-42 로 가결하였음. 트럼프 정부 시절의 규칙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현재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하원에서 다수표를 받아야 하며, 이후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함. 백악관 관리예산처는 표결일 전날 저녁 성명을 통해 이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 Exxon, BP 등 대형 원유 및 가스 회사들은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에 반대하였으나, 중소기업들은 규제 완화를 지지하였음.
- 규제가 복원될 경우, 원유 및 가스 회사들은 자사 장비 및 시설의 메탄가스 유출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시 이를 수리해야 함.
- 이러한 트럼프 정부 정책 뒤집기는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에 제시한 목표 수준 대비 50~52%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후에 나왔음.
- 의원들은 트럼프 정부 시절 규제들을 뒤집기 위한 다른 결의안들을 발의하고 있음. 그 중 하나는 상장기업 주주제안에 대한 SEC 규칙 개정법을 폐지하는 것임. 당시 트럼프 정부는 주주제안을 상정하기 위한 기준을 높이고, 이를 다시 상정하기 위해 필요한 찬성표 요건을 강화하였음.

04. 기업 리더들은 미국의 ESG 공시 향방을 예측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노력을 살펴보고 있음

ESG 보고에 대한 국제 표준(global standards)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이 미국 규제 당국이 강제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지표로 여겨지는 바, 기업 리더들과 자문사들은 이를 면밀히 관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 화요일 초당정책센터가 주최한 비대면 행사에서, 기업들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증권규제당국이 지지하고 있는 IFRS 재단의 노력을 주목하였습니다:

- 기후변화 리스크 가격 책정 기업인 Trucost의 CEO 리처드 매티슨은 SEC가 IFRS 재단이 주도하는 바를 따라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 최근 몇 주 동안, SEC 관료들과 존 케리 미 대통령 기후 특사는 미국의 ESG 공시 규칙이 국제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IFRS 재단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음. SEC 소속 공화당 의원인 헤스터 피어스 의원은 SEC가 ESG 지표를 국제 지표와 일치시키거나 지나치게 규범적인 접근법을 취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함.
- 지난 주 화요일 행사에서 Chevron의 리사 에피파니는 국제 회계 표준을 수립하는 IFRS 재단이 만든 표준을 사용하는 것은 그와 다른 회계 관행을 사용하고 있는 많은 다른 미국 기업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함.
- Prudential의 수잔 클랏은 금융 서비스 기업들에게 기후변화 정보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기후변화 정보는 이제 시장의 최저 기대치가 되어가고 있다고 지적함.

기타뉴스

- **기후변화 관련 요구가 IT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Twitter 는 자사의 온실가스 배출을 공시하고, 파리협정에 따라 2050년까지 넷 제로(net zero)를 달성하기 위한 배출 감축 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음. 주주 단체는 Twitter 에게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해왔음. Twitter 의 이러한 노력은, 보다 직접적이고 집약적으로 탄소발자국을 남기는 산업에 속하지 않은 기업들에게도 기후변화 관련 요구가 증대되는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
- **미 하원 농업위원회가 탄소시장에 뛰어들었음:** 하원 농업위원회(House Agriculture)의 의장이자 조지아 주 하원의원인 데이비드 스콧 의장은 농업위 패널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농부 및 목장 주인들을 돕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힘. 스콧 의장은 탄소 배출권을 제공하고 탄소 배출 감축을 실천하는 농부들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기업들을 언급하였음.

- 2021년 4월 4주 -

행정부와 민간 부문이 중대 발표를 준비하며 연일 환경 관련 뉴스가 쏟아지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고 전 세계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4월 22일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기업들로 하여금 정치자금 지출이 기업 가치에 부합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노력과,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접종 캠페인에 있어 기업 역할의 현황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01.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 기준이 전 세계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지적

바이든 행정부가 상장기업들 및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전 세계적으로 수립된 기준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정보 보고를 의무화할 것이라는 조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 화요일 최초의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인 존 케리 기후특사는 백악관이 그러한 의향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과정은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존 케리 미 기후특사는, 지속가능한 투자 및 기업활동 옹호 단체인 Ceres가 주최한 비대면 행사에서 발언하였음. 케리 기후특사에 따르면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는 자본배분을 변화시킬 수 있음. 또한 케리 기후특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공시 요건과 관련하여 유럽과 함께 협력할 것이라고 밝힘. 케리 기후특사는 유럽연합(EU)은 EU만의 요건을 가지고 있으며 좀 더 규제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미국은 인센티브 기반 정책을 선호한다는 점을 언급함.
- 행사 중 Ceres는 최소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제로화 하는 탄소중립(net-zero)에 도달하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한 2030년 중간 목표를 설정하고 기후 관련 정보를 공시하겠다는 Ceres의 서약에 14개 자산운용사가 동참하였다고 발표했음. 새로 동참한 자산운용사들 중에는 세계 3위 규모의 자산운용사인 State Street도 포함되어 있음. 이는 전 세계 3위권의 대규모 자산운용사들이 모두 이러한 약속에 동참했다는 것을 의미함.
- 케리 기후특사에 따르면,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세계에는 지금껏 민간 부문이 제공한 조치보다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함. 케리 기후특사는 금융기업들이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국가들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을 요구함.
- 케리 기후특사의 발언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여론수렴을 개시하며 기후변화 리스크 공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잠재적인 첫 걸음을 내딛고, 선임 SEC 위원장으로 확정된 게리 겐슬러 후보가 해당 사안을 고려해볼 것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나왔음. 최근 미국의 두 개의 상장기업 Apple과 Salesforce는 기후 관련 공시에 관한 규제 정책을 지지한다고 발표했음.

02. 주주제안은 기업의 선거자금 지출이 기업가치에 부합하도록 만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낙태 정책을 강조하고 나섰음

기업 정치 자금 지출 문제를 목표로 삼았던 주주들은 오랫동안 투명성에 주목하여 왔으나, 지난 1월 6일 미 국회의사당 습격사건 이후, 기업 정치자금이 기업가치에 부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안이나 모든 정치자금 지출을 없애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투자자들은 낙태 정책에 초점을 맞췄을 때 정치 자금 지출이 이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며 주주제안을 제의하고 나섰습니다:

- 기업 정치자금과 낙태 접근권에 대한 관심은, 보수성향 대법관이 늘어난 미 대법원이 낙태 관련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나왔음. 일부 주주행동주의자들을 포함하는 낙태권 지지자들은, 이러한 상황이 낙태권을 정립한 역사적인 1973년 Roe v. Wade 사건을 약화시키는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함.
- 4월 22일 해당 사안에 대한 2021년의 최소 3개 주주제안 중 하나가 Pfizer에서 주주투표에 부쳐짐. 해당 주주제안은, 부분적으로, 낙태에 반대하는 정치인 및 단체에 대한 Pfizer의 정치기부금 지출이 주로 의료적 낙태를 위해 처방되는 의약품에

대한 Pfizer 의 매출과 상충하고 있다고 주장함. Pfizer 는 해당 주주제안에 반대하며, 규제당국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회사의 정치기부금 지출은 "후보의 입장 또는 사회 또는 종교적 문제에 대한 지지를 함의하지 않는다"고 밝힘.

- 비슷한 조치가 JP Morgan 에서 5 월 18 일, 및 Home Depot 에서 5 월 20 일 주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며, 해당 기업들은 주주들에게 해당 제안에 반대해줄 것을 요청함. 해당 사안 지지자에 따르면, FedEx 역시 가을에 표결에 부치도록 주주제안을 받았음.
- 해당 투표 항목은 여성의 생식 보건 관련 벤처기업들에 투자하는 사회 임팩트 기금인 Rhia Ventures 와 Rhia 에 자금을 조달하는 여성 보건 기구 Tara Health Foundation 로부터 제기되었음. Rhia 의 셸리 알펜은 CQ Roll Call 에게 낙태에 반대하는 정치인 및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은 기업의 복리후생 및 보험 정책과 상충할 수 있으며, 기업이 여성 근로자를 모집하고 유지하는 데 위협이 될 수 있고, 평판 리스크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함. 알펜은 기업들이 정치자금 지출을 완전히 중단하거나 기업의 정치자금 지출 과정에서 ESG 를 고려할 것을 요구함.

03. 집단면역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들은 직장에서 근로자들에게 코로나 19 백신을 제공할 것을 고려하고 있음

기업 및 공중보건 지도자들은 지난 주 화요일 보건행동연합(Health Action Alliance, HAA)가 주최한 타운 홀 미팅과 페이스북을 통해, 기업들은 근로자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에 대해 교육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업들이 백신접종을 의무화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가운데, 직장에서 코로나 19 백신을 제공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최근 몇 달 간 백신 접종은 기업들의 논제였음. 가장 최근의 논의는 백신 접종 촉진을 위해 기업을 지원하는 단체인 HAA 와의 타운 홀 미팅에서 이루어졌음.
- 백신 공급이 증가하고 백신 접종 자격이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미국 기업들은 백신 의무화를 채택하고 있지는 않음. 타운 홀 미팅에서 HR 컨설팅 회사 Mercer 의 베스 움랜드가 밝힌 바에 따르면, Mercer 가 4 월 15 일 시행한 설문 of 예비적 결과에 따르면 160 개 응답 중 오직 3%의 기업만이 백신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75%의 기업들은 근로자들과 안전 및 능률에 대해 소통함으로써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있음.
- 움랜드에 따르면, 약 25%에 달하는 기업들이 직장 또는 직장 근처에서 근로자들에게 백신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아직 많은 기업들은 이를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음.
- 타운홀 미팅에 포함되었던 패널 토론에서, 기업 임원들은 이와 유사한 정서를 보여줌. Walmart 의 치니 풀루루는 추가적 유급 휴가 제공이나 현장 백신 접종 행사 등을 통해 백신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힘. 전미제조업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Manufacturers)의 에린 스트리터는 백신 접종을 망설이는 정서가 여전히 가장 큰 도전과제로 남아있다고 언급함.
- 관련 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근로자들이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새로운 세제지원을 발표하기 시작함. 한 관료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 의무화 결정은 기업들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말함.

04.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화석 연료 기업들에 대한 연방 세금 우대 조치 철폐 법안 상정

지지난 주 백악관의 기후변화 정상회의가 다가오며, 민주당 의원들은 의회의 관심을 기후변화 정책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상원의원들은 청문회를 개최하였고, 버몬트 무소속 상원의원인 버니 샌더스 의원은 석유, 가스 및 석탄 기업들에 대한 연방 보조금 지급을 철폐하는 법안 초안을 제출하였습니다:

- 미 상원예산위원회(Senate Budget Committee)의 의장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기후변화에 대한 청문회를 주재하였으며, 해당 청문회에서 기후 및 경제 전문가들은 신속한 행동을 촉구함. 20 년 이상 Goldman Sachs 에서 일해왔으며, 미국상품선물거래위원회(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CFTC)의 기후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밥 리터맨 위원장은, 입법자들이 온실가스 배출에 불이익을 주는 세금을 부과하고 대체적 저탄소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를 장려해야 한다고 지적함.
- 샌더스 상원의원은 Exxon, Chevron 및 BP 의 임원들에게 청문회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이들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힘.
- 회의 전에, 샌더스 상원의원은 석유, 가스 및 석탄 제조업체들에 대한 보조금을 철폐하는 법안 초안을 상정하였으며, 미네소타 주 민주당 하원 의원인 일한 오마르 의원이 동반법안(companion bill)을 하원 의회에 발의하였음. 해당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2 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계획의 조항과 유사함. 해당 법안은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온실 가스 배출 기업들에게 최초 1 톤당 15 달러의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법안을 상정한 가운데 발의되었음. 해당 법안의 세금은 전체 배출 수준이 특정 지점으로 감소할 때까지 증가함.
- 사우스캐롤라이나의 공화당 상원의원인 린지 그레이엄을 비롯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기후변화에 대해 초점을 맞추는 것을 지지하였음. 온실가스 배출세를 지지하는 초당적인 기후 리더십 위원회(Climate Leadership Council)의 하원의원들과 회의를 가진 이후, 그레이엄은 “녹색 에너지 탐색에 저도 참가하겠습니다.”라고 밝힘. 그레이엄은 미 상원예산위원회 패널의 최고 공화당 의원임.

- 2021년 4월 3주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새로운 의장이 취임하였으며, 인종정의(racial justice) 감사와 기후 로비활동(climate lobbying) 관련 쟁점으로 주춤 시늉이 뜨겁습니다. 또한, 기업들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최신 소식도 있습니다.

01. BlackRock 이 인종평등 감사 도입에 동의한 이후 기업 주주들이 인종평등 감사에 대한 투표에 착수함

이번 주 기업 주주들은 상장기업들이 인종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할지 여부에 대해 투표를 시작하였습니다. 전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인 BlackRock 은 이미 해당 감사에 동의했습니다:

- 작년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경찰의 의한 조지 플로이드 피살 이후 주주들은 2021년 인종평등 및 정의에 관한 다양한 결의를 새로 제의한 바 있음. 인종평등 감사 요구를 찬성하는 CtW Investment Group 의 디터 바이제네거 이사는 지지난 주말 교통검문 중 발생한 킴 포터 경찰관의 흑인 남성 단테 라이트 피살 이후 기업과 투자자들은 인종정의를 위한 조치의 필요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신속한 해결은 요원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였다고 설명함.
- 최초 요청들 중 기업의 정책, 관행, 제품 및 서비스를 포괄하는 인종평등 감사는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임. BlackRock 은 북미서비스노동자국제연맹(SEIU)으로부터 주주제안이 제출된 후 다음 연도부터 자사의 다양성, 평등 및 포용성(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DEI) 노력이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하는 데에 동의한 바 있으며, 곧 유사한 조치에 대한 요청을 표결에 부칠 것임.
- Morgan Stanley 와 CoreCivic 도 유사한 약속을 함에 따라 주주들이 요청을 철회하였음. 그러나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러한 감사에 반대하고 있는데, 다음 몇 주 동안 은행, Johnson & Johnson 및 Amazon 이 표결을 시작할 예정임.
- 미국 의결권 자문사 Glass Lewis 는 J&J, Bank of America 및 Goldman Sachs 에 상정된 해당 주주제안을 지지할 것을 권고하고 나섰음.
- SEC 가 회사들이 특정 주주제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을 수 있다고 결정함에 따라 다른 조치들의 결과는 혼합적임. 기업 문화 내 인종차별과 관련된 사안들이 주주투표에 부쳐졌으며, 주주들은 은행 상품들의 인종적 영향, 경찰과의 파트너십, 인종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계획 공시를 요구한 주주제안에 대한 회사의 약속을 받아냈음.

02. 상원에서 53-45 찬성으로 게리 겐슬러가 신임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공식 취임함

지난 주 수요일 상원이 투표를 통해 53-45 로 게리 겐슬러(Gary Gensler)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으로 확정함에 따라 SEC 의 다수를 차지하게 된 민주당이 ESG 공시 의무화 도입을 위한 움직임에 나설 것이라 예상됩니다:

- ESG 에 대한 주주들과 민주당 의원들의 관심이 높아져가는 상황에서 3월 인준 청문회 당시 기업들에게 정치자금지출 및 기후변화 리스크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겐슬러가 SEC 위원장으로 취임함. 다만, 그는 이사회 다양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음.
- 겐슬러의 ESG 관련 입장은 다수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많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음. 상원 은행위원회의 최고 지위 공화당 의원인 펜실베니아 주 페트릭 투미 의원은 지난 주 원내발언에서 자신은 겐슬러의 인준 확정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며, 이는 해당 인준이 ESG 공시 의무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투미 의원은 기후변화와 기타 ESG 사안들은 금융규제당국의 권한 밖의 일이라고 주장해 왔음.

- 겐슬러의 지명이 계류 중인 동안에는 엘리슨 헤런 리 SEC 위원장 대행이 ESG 이니셔티브를 추진하였으며, 기후변화 리스크 보고에 대한 여론수렴도 요청한 바 있음.
- 또한 SEC 는 지지난주 ESG 투자 공시에서의 격차를 정리한 리스크 유의사항을 발행하였음. SEC 는 ESG 요소 측정 방식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 펀드에게 기업들의 ESG 기록을 고려하라는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고의 정확성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ESG 상품에 대한 투자자문사들의 진술의 정확성과, 이들이 펀드에 포함할 기업을 선정하는 방식을 확인할 예정임. 최근 조사에서 결함이 발견됨에 따라, 규제기관들은 모든 자문사들에게 이들 공개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구함.

03. 기업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2030년까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으로 줄이는 목표를 설정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함

지난 주 화요일 300 개 이상의 기업들이 바이든 행정부에게 보낸 서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절반으로 감축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030년은 일부 기업들의 탄소발자국 감축 목표 연도입니다. Ceres 와 We Mean Business 가 이끄는 해당 계획에 서명한 기업들에는 Walmart, Nike, McDonald's, Facebook, GE 및 Microsoft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해당 서신은 4월 22일 기후정상회의(Leaders Summit on Climate)의 개시를 앞두고 발송되었는데, 같은 날 바이든 행정부는 파리협정에 따른 미국의 국가결정기여(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음.
- 기업들은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자사의 배출 감축 목표를 언급하였는데, 그 중에는 2050년까지 넷 제로(Net-Zero)를 달성한다는 목표도 포함되어 있음. 기업들은 "과감한 목표"를 통해 새로운 투자, 높은 급여의 일자리, 코로나 19로부터의 경제 회복 및 다른 국가들 및 민간 부문의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함.
- 또한 Apple 은 기후변화 리스크 보고를 요구하는 공개적인 행동에 나섰다. Apple 의 에너지 및 환경정책 총괄 책임자는 지난 화요일 성명을 통해 "기업 공시는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 밝히며, SEC 에게 제 3 자 감사를 거친 기업의 직,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 현황 공시를 의무화할 것을 요구하였음.

04. 주주들에 따르면 기후변화 관련 로비현황 보고에 동의하는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음

작년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기후변화 관련 로비활동 공개 요구가 Chevron 주주투표에서 다수의 찬성표를 얻고 BlackRock 의 승인을 받으며, 새로운 물결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다섯 개 기업은 주주투표 부의 없이 해당 주주제안에 동의하였습니다:

- 보험회사 AIG, 철도회사 CSX 및 전기회사 Duke Energy, FirstEnergy 및 Entergy 가 자사의 기후변화 관련 로비활동을 일정 형식으로 보고할 것이라 약속함.
- 2 조 달러 규모의 기업 책임에 관한 범 종교 센터(Interfaith Center on Corporate Responsibility, ICCR)는 회원들이 5 개 기업과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그에 따라 주주제안이 철회되었다고 발표함.
- 기업에 해당 문제를 제기해오던 기관인 As You Sow 의 릴라 홀츠먼은 이번 합의는 기업들이 자사의 잘못된 기후변화 관련 로비활동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쟁점임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함. 릴라 홀츠먼은 비록 "A+ 보고서"가 드물긴 하지만, 공시는 투자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함.

- CSX 에 해당 요구안을 제출했던 유니테리언 유니버설리스트 협회(Unitarian Universalist Association)의 팀 브레넌은, 바이든 행정부의 광범위한 기후변화 정책 추진으로 인해 기업들이 자사의 로비활동을 관리해야 한다는 압박이 증대되고 있으며, 집권당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는 우려 없이 자유롭게 기후변화 정책 관련 입장을 공표할 수 있게 되고 있다고 설명함.
- ICCR 에 따르면, 기후변화 로비활동 보고를 요구한 주주제안에 반대했던 회사들은 Exxon, Sempra Energy, Norfolk Southern, Phillips 66, Delta Airlines 및 United Airlines 임.

05. 주주단체가 미국 수용소 및 교도소 시설 상태에 문제를 제기하며 GEO 이사들을 축출하려는 캠페인을 시작함

한 주주 단체가 미국 이민자 수용소 및 교도소 운영을 맡고 있는 민영 교도소 운영 회사인 GEO 그룹에 문제를 제기하며 GEO Group 이사 과반수 이상을 축출하고자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는 인권 리스크에 초점을 맞춘 가장 최근의 주주활동입니다:

- 2500 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노조 후원 연기금 연합 단체 CtW Investment 는, 동료 투자자들에게 4 월 28 일에 열리는 GEO 연례 회의에서 이사 5 인의 재선에 반대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CtW 는 해당 이사들이 시설의 열악한 상태와 잘못된 처우에 대한 클레임을 방지하지 못하여 회사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훼손하고, 이미지, 규제, 재정 및 법적 리스크를 발생시켰다고 지적함.
- CtW 는 특히 이사회 이사들의 독립성과 이사들 가운데 인권 및 의료보건 전문가가 부재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 GEO 는 최신 인권 및 ESG 보고서에서 회사는 전세계 및 미국 내의 정부 기준을 준수하며, 인가 기관의 지침을 따르고 있고, 회사 초창기부터 회사가 관리하는 인력들에 대한 인권과 윤리에 대한 강한 헌신으로 회사를 운영해왔다고 밝힌 바 있음.
- 또 다른 교도소 운영사이자 상장사인 CoreCivic 도 비슷한 요구에 직면하였는데, 이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맞이하여 인권을 포함한 사회 리스크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대되었다는 점을 보여줌.

- 2021 년 4 월 2 주 -

지난 주에는 투자자들의 기후투쟁(climate battle)이 기업 이사회로 번졌으며, 조지아 주의 투표법, 금융규제당국의 기후 조치(또는 조치의 부재), 요양원에서 코로나 사망자 수가 새로운 ESG 쟁점이 되었습니다.

01. 기후변화에 주목하는 투자자들이 이사회 의석 확보를 위한 투쟁에 나설 때라고 선언

더 많은 투자자들이 기업에 압력을 가하거나 이사회 이사들을 축출하기 위해 헤지펀드와 유사한 전략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들 투자자들은 기후변화를 긴급한 위협으로 인식하며, 이사회에서 투쟁을 시작할 때라고 주장합니다:

- Exxon 의 이사회 의석 13 석 중 4 석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에 참전 중인 미국 2 위 규모의 공적연금 CalSTRS 는 최근 최후 수단으로서의 “활동가 스튜어드십(Activist Stewardship)” 채택을 발표하였으며, 해당 전략에는 이사회 수준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헤지펀드와의 연합도 포함되어 있음.
- CalSTRS 는, Exxon 에서의 경우처럼, 주주 제안, 사적 논의, 협력적 주주관여(collaborative engagement) 및 기타 다른 모든 활동이 실패하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만 해당 옵션을 고려할 계획임.
- As You Sow 의 CEO 앤드류 비할은 전통적인 전략들이 석유, 가스 및 유틸리티 분야가 기후변화에 제대로 대처하도록 만들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이 증명된 이상, 소송 및 이사회 투쟁을 통해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이러한 노력은 헤지펀드들이 보다 많은 ESG 메시지를 채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앤드류 비할은 ESG 개선이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전통적 헤지펀드 활동가들과 주주투표 결의로 ESG 를 강화하는 “주주제안권에 관한 미 증권거래위원회 규칙(14a-8)을 활용하는 활동가들” 사이에 접점이 존재한다고 설명함.

02. 조지아 주 투표법에 대한기업들의 늦장 대응이 기업의 정치자금 지출 문제를 재점화

여론의 압력과 보이콧 운동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에 의하면 입안 시 투표권 행사를 어렵게 만들어 흑인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박탈하게 될 조지아 주 투표법 법안에 대해 조지아 주의 최대 기업들이 즉각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 1 월 6 일 미국 국회의사당 습격 사건 이래 미국 거대 기업의 주주, 활동가, 소비자 및 직원들은 기업들에게 공정한 선거와 투표 접근권을 지지하는 입장을 취하라는 압력을 높여왔으며, 당시 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정치후원금에 대해 재검토할 것을 약속하였음.
- 지난 주 흑인 기업가들은 뉴욕타임즈에 광고 형식으로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실었으며, 해당 광고에서 72 개사 기업 총수들과 금융 리더들은 미국 기업들이 미국 시민들의 투표권을 제한하는 조치에 명시적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함. 현재 텍사스에서 일부 기업들이 이를 실천하고 있음.
- 1 조 달러 규모의 공공기금 운용사들은 조지아 주의 거대 기업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조지아 투표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을 후원하면서 동시에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운동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모순이라 지적하며, 이사회에게 평판 리스크를 위협을 경감하기 위해 취하고 있는 조치 및 투표 접근권 제한에 찬성하는 선출직 관료들을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정치자금 지출 정책을 변경할지 여부에 대해 공개할 것을 요구함.

- 정치적 책임성 센터(Center for Political Accountability)의 브루스 프리드는 정치 자금 지출에 대해 증가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이미 기업과의 논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주주총회 시즌 몇 주 전까지 센터의 투명성 제안에 동의한 기업 수가 작년 한 해 동안 동일 제안에 동의한 기업 수에 맞먹는다고 설명함.

03. Ceres 가 보고서에서 미국 금융규제당국에게 기후변화 리스크에 대한 조치를 가속화할 것을 촉구

지속가능성 투자를 지지하는 활동가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기후변화 리스크를 금융시스템 감독에 통합하기 위해 속도를 낼 것을 요구했습니다:

- 환경정책 관련하여 기업 및 정책 입안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 투자자들과 협력하여 발간한 이번 보고서에서 Ceres 는 미국 금융규제당국에게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를 더 긴급하게 취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Ceres 의 비나 라마니는 수년간 정부가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고에 대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주장함.
- Ceres 는 기후변화가 공인된 대통령의 우선순위임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대부분의 기관들이 아직까지도 기후변화 리스크와 관련하여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거나 전혀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 Ceres 가 열거한 감독기관들이 취해야 할 즉각적인 조치에는 기후변화가 구조적 리스크라는 점을 확인, 기업 기후변화 리스크 공개 의무화, 기후변화 리스크 대처 전담 직원 고용, 감독 및 투자자 보호 조치 수립 등이 포함되었으며, Ceres 는 구조적 인종차별과 기후변화 리스크가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간주하는 총체적인 접근을 요구함.
- 지금까지 감독기관들이 취해 온 기후변화 관련 조치들은 기후변화는 금융규제당국의 권한 밖의 일이며, 이러한 조치는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에 직면하였음.

04. 투자자들이 코로나 19 이후 요양시설에서의 돌봄의 질과 근로환경 개선을 요구

3.34 조 달러 규모를 운영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요양시설 직원들을 대변하는 스위스 노동 조합과 함께 전 세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장기 요양 시설들에서 심각한 사망자 수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여 요양시설 기업들이 돌봄의 질과 근로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 UNI 글로벌유니언과 95 개 투자자 그룹들은 성명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의 다수가 요양시설 입소자들이며, 감염자의 다수가 요양시설 근로자들이라는 점을 지적함.
- 해당 그룹은 기업들에게 적정 인력 규모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best practice)를 준수하고, 모든 직원들에게 유급 병가 및 전염병 위험 수당을 지급하며, 임금을 인상하고,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를 존중하며, 입소자 만족도를 보고하고, 돌봄의 질 지표를 일반에 공개하는 조치 등을 요구함.
- 이들은 직원 채용, 건강 및 안전 조치, 임금, 노동조합 권리와 돌봄의 질, 성과 및 임원 인센티브 지급 공개 보고에 대한 이사회 차원의 감독을 추진하고 있음.
-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계획에는 가정 및 커뮤니티 기반 돌봄 서비스에 대한 노인들 및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4000 억 달러 지원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백악관에 따르면, 지원책에는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고임금 돌봄인 일자리 지원도 들어 있음.

05. Equilar 가 CEO 보수와 직원 임금 간의 격차가 2020 년 더 증가했다고 보고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기업인 Equilar 에 따르면,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2020 년 평균 CEO 보수와 평균 직원 임금은 모두 감소하였습니다. 일부 기업 리더들이 자신들 역시 경제적 손실의 고통을 느꼈다고 말했으나, 더 큰 고통을 받은 쪽은 근로자들이었습니다:

- Equilar 는 미국의 매출 상위 500 대 상장기업들의 2020 년 임금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3 월 중순까지의 규제당국 제출 서류들을 분석하였으며, 해당 평가는 해당 기업들 중 40%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 이들 기업의 CEO 보수 중간값은 1160 만 달러로 2019 년 대비 5.7 퍼센트 감소한 수치였으며, 직원 임금 중간값은 58,100 달러로, 전년 대비 10 퍼센트 감소한 수치였습니다.
- 이는 평균적으로 CEO 가 근로자에 비해 227 배 높은 보수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2019 년의 191 대 1 보다 더 벌어진 임금 격차임.
-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에서도 형평성이 감소하였는데, 여성 CEO 의 보수는 25 퍼센트 감소하여 910 만 달러로 나타났으나, 남성 CEO 는 평균 1170 만 달러를 받음. (다만, Equilar 는 가장 고액의 보수를 받는 여성 CEO 를 둔 회사들이 아직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기에 차후에 격차가 좁혀질 수 있다고 언급함.)
- 코로나바이러스의 범유행으로 인해 많은 CEO 들이 적은 보수나 현금 보너스를 받았으나, 이들의 장기 지분급여는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지분급여가 CEO 보수 중 가장 수익성이 좋은 부분임.

기타 뉴스

지난 주 주목할 추가 ESG 뉴스입니다:

- **기후변화 정책:** 기업들이 기후변화 관련 노력들을 브랜드화하고, 미국석유협회(American Petroleum Institute)이 회원들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탄소세를 지지하고 나서며, 민주당이 기후변화를 해결하려고 하는 가운데, 지형이 변화되었음.
- **연준(Fed)에서의 기후:**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 및 러시다 텔리브 의원을 비롯한 25 인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제롬 파월에게 기후변화 리스크를 건전성 기준(prudential standards)에 통합하고, 환경오염에 과도한 영향을 받은 공동체들을 원조하는 투자를 활성화하며, 구체적인 기후변화 관련 통화정책 및 은행 감독 변화를 이끌어낼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냄.
- **놓치지 마세요:** 지지난 주 로이터 뉴스에 따르면, 상원 은행위원회 의장 세러드 브라운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개정되었던 주주제안 관련 규칙을 되돌리기 위한 결의를 제의하였음.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규칙을 개정하여 주주투표를 요청하기 위해 주주가 보유해야 하는 최소 주식 수와 재투표에 부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찬성표 수를 높인 바 있음. 의회검토법에 따라 해당 개정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상하 양원의 단순 다수표를 획득해야 함.

- 2021 년 4 월 1 주 -

지난 주에는 바이든 행정부의 각료들, 정책 입안자들, 투자자들 및 기업 수장들이 다양한 포럼에서 기후변화와 다양성 이슈에 대한 각자의 노력과 전망을 발표하였습니다.

01. 바이든 각료들,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민간부문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며 투명성 촉구

지난 주 지속가능성 분야 공익재단인 Ceres 가 비대면으로 주최한 연례회의에서 바이든 행정부 각료들, 기업 수장들 및 투자자들이 기후변화, 인종정의, 공정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ESG 공시에 대한 자산운용사들의 입장: Blackrock 의 샌디 보스는 SEC 에게 자산운용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위원회에게 자산운용사들이 탄소 중립 계획을 준수하는 기업들의 지분 추가 보유 등 투자자들에게 원하는 바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ESG 관행에 대한 더 개선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 민주당 의원들의 플라스틱 포장 법안: 민주당 의원들은 플라스틱 포장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재활용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다시 상정할 예정임. 의원들은 과거에 이 법안을 상정하였으나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함. 해당 법안의 지지자들은 이번에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함에 따라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 보험산업에서의 다양성: 뉴욕 규제기관은 보험회사들에게 규제당국이 보험산업의 이사회 및 경영진의 인종, 민족 및 성별다양성 데이터를 수집할 것이며, 보험회사들이 설정 목표에 대한 진척도를 측정하는 등 해당 사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02. BlackRock 의 CEO 래리 핑크, TCFD 에 따른 기후변화 위험보고 의무화 요구

BlackRock 의 CEO 래리 핑크는 지난 주 월요일 비대면으로 진행된 "경제 전문가들의 지속가능성 주간"에 참석하여 각국 정부에게 기후관련 금융정보공시 태스크포스(TCFD, 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의 권고안에 따른 기후변화 위험 정보를 요구하되, 글로벌 표준이 수립되기 전까지 면제규정(safe harbor)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BlackRock 은 기업들에게 직·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 정보와 기업들이 에너지와 토지 사용 관련 기후변화 위험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TCFD 기후변화 위험 보고표준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압박하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작년 미니애폴리스에서 조지 플로이드(George Floyd)가 경찰에 의해 살해된 후 다수 ICCR 회원들이 자신들의 단체 및 포트폴리오에 내재된 조직적인 인종차별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한 결과 촉발됨.
- 래리 핑크 CEO 는 또한 공공기업이 민간기업을 공급자로 두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업의 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 보고를 위해서는 각국 정부가 공공기업과 민간기업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칙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함.
- BlackRock 이 발간한 2021 년 주주관여 우선순위(engagement priority)에 따르면, Blackrock 은 기업의 천연자원 관리와 직원 다양성 데이터 공시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03. 미 상원 은행위원회(Senate Banking Committee), 첫 기후변화 관련 패널 청문회 개최

LAWnB e-Handbook: ESG Highlights, Related Legal Issues, and Trends in domestic and overseas
Thomson Reuters, LAWnB
www.lawnb.com

민주당 의원들은 미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기후변화와 금융시스템에 관한 첫 청문회를 소집하였습니다:

- 민주당 소속 세러드 브라운 은행위원회 의장은 기후변화가 금융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 및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들의 투명성을 요구하는 규칙이 필요하다 주장함.
- 몇몇 민주당 의원들은 기업들은 투명성 부재 덕분에 암묵적으로 기후변화 지원정책을 반대하면서도 기후변화 정책을 지지하는 약속을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정치자금 지출 공시도 필요하다 역설함.
- 은행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인 패트릭 투미 상원의원은 규제기관은 사실상 화석연료 회사와 같은 정치적으로 냉대를 받고 있는 산업을 처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후변화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리스크가 아니므로 SEC 나 FED 가 ESG 나 기후변화를 다루는 것에 반대함.
- 다른 공화당 의원들도 민간부문의 노력이 정부개입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함.

04. 금융부문의 다양성 문제를 다룬 하원 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다양성 보고 의무화 제안

지난 주말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기업들이 다양성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였습니다:

- 해당 법안은 이사회 및 임원 다양성 공시 의무화, 은행 규제당국의 다양성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 추가 혹은 강화, 투자자문 선정에서 다양성을 대변하는 후보 고려, 정부에게 금융 규제에 대해 자문하기 위한 패널 조직을 규정함.
-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 맥신 워터스 의장은 대형 투자회사들이 그들의 조직이나 그들이 고용한 자산운용사 내 다양성 촉진에 실패했다고 지적하며, 투자자들에게는 비교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다양성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밝힘.
- 공화당 앤 와그너 하원의원은 다양성 향상에 대한 지정학적 제약과 기타 어려움들을 고려하면 정책 입안자들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단일 시스템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 기업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미 상공회의소 대표는 상공회의소는 다양성 보고 의무화에 반대하겠다고 밝혔으며, CalPERS 대표 및 뉴욕주 감사실(New York State Comptroller's Office)를 포함하는 다른 증인들은 표준화되고 비교가능한 다양성 지표가 없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함.
- 수자원, 다양성 및 포용성 분과위원회(Waters and Diversity and Inclusion Subcommittee) 조이스 비티 의장은, BlackRock, Vanguard 및 State Street 을 포함하는 미국 기업 31 개사에게 2016 년부터 현재까지의 직원 및 이사회 다양성, 공급자 다양성, 다양한 자산운용사의 선임 및 다양성에 대한 도전, 포용성 관련 노력에 대한 데이터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하였다고 밝힘.

05. 주주총회 시즌 Starbucks 및 AmerisourceBergen 의 CEO 에 대한 임원보수 주주투표(say-on-pay)가 개시됨

3 월 시작된 주주총회 시즌 중 주주들은 미국의 최대 기업 중 2 개사인 커피 체인점 Starbucks 와 의약품 물류회사 AmerisourceBergen 의 CEO 보수 지급 관행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CEO 보수 문제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 AmerisourceBergen 은 CEO 보수안에 대해 49%의 반대표를 얻으며 간발의 차이로 부결을 모면했으며, 회사가 이렇게 낮은 득표율을 얻은 것은 처음임.
- Starbucks 는 십 년 전 주주권고투표가 시작된 이래 최초로 임원 보수에 대한 결의가 부결됨.
- 해당 투표는 진보 성향의 정책입안자들이 CEO 보수를 면밀히 조사하고, 특히 CEO 보수와 일반 직원의 보수를 비교하는 와중에 이루어졌으나, 이러한 관심은, 임원 보수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치에 영향을 주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임원 보수는 여전히 주주 수익과의 관계에 좌우되었음.

기타뉴스

- **ESG 공시에 대한 자산운용사들의 입장:** Blackrock 의 샌디 보스는 SEC 에게 자산운용 관련 자문을 제공하는 위원회에게 자산운용사들이 탄소 중립 계획을 준수하는 기업들의 지분 추가 보유 등 투자자들에게 원하는 바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ESG 관행에 대한 더 개선된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 **민주당 의원들의 플라스틱 포장 법안:** 민주당 의원들은 플라스틱 포장을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재활용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다시 상정할 예정임. 의원들은 과거에 이 법안을 상정하였으나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함. 해당 법안의 지지자들은 이번에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함에 따라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음.
- **보험산업에서의 다양성:** 뉴욕 규제기관은 보험회사들에게 규제당국이 보험산업의 이사회 및 경영진의 인종, 민족 및 성별다양성 데이터를 수집할 것이며, 보험회사들이 설정 목표에 대한 진척도를 측정하는 등 해당 사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힘.

로앤비 e-핸드북:

ESG 주요 내용 및 관련 법률이슈와 국내외 동향

톰슨로이터 로앤비

2021.05.20

COPYRIGHT©LAWNB, THOMSON REUTERS. ALL RIGHTS RESERVED.

본 로앤비 e-핸드북 [ESG 주요 내용 및 관련 법률이슈와 국내외 동향]는 로앤비의 [로펌 리포트] 및 [논문평석] 위어 발행하였습니다.

로앤비 e-핸드북은 각 로펌의 동의 하에 본문을 게재하였으며, 논문평석 자료 및 콘텐츠는 추천리스트와 초록을 게재하였습니다.

본 자료의 무단전제 및 상업적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LAWnB e-Handbook: ESG Highlights, Related Legal Issues, and Trends in domestic and overseas

Thomson Reuters, LAWnB

www.lawnb.com

